제32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 회　　기 : 2023. 10. 31.(화)~11. 10.(금)(11일간)

2. 의사일정

일 시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10. 31.(화) 10:00	본회의 (1차)	개　　회　　식	본회의장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1. 제32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4.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7.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수시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운영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10.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2.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3. 동두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동두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동두천시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동두천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 시	구 분	의 사 일 정	비 고
11. 1.(수) 10:00	본회의 (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① 기획감사담당관 ②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자치행정국] ③ 자치행정과 ④ 사회복지과	본회의장
11. 2.(목) 10:00	본회의 (3차)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치행정국] ① 복지정책과 ② 여성청소년과 ③ 세무과 ④ 회계과 ⑤ 민원봉사과	본회의장
11. 3.(금) 10:00	본회의 (4차)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경제문화국] ① 관광휴양과 ② 일자리경제과 ③ 문화체육과 ④ 환경보호과	본회의장
11. 4.(토) ~ 11. 5.(일)		**휴 회(공휴일)**	
11. 6.(월) 10:00	본회의 (5차)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경제문화국] ① 정보통신과 ② 농업축산위생과 [보건소] ③ 보건행정과 ④ 건강증진과 / ⑤ 환경사업소	본회의장
11. 7.(화) 10:00	본회의 (6차)	1. 조례안 등 심의	의원회의실
11. 8.(수) 10:00	본회의 (7차)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전도시국] ① 안전총괄과 ② 교통행정과 ③ 건축과 ④ 도로과	본회의장
11. 9.(목) 10:00	본회의 (8차)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전도시국] ① 도시재생과 ② 공원녹지과 ③ 투자개발과 / ④ 시설사업소 / ⑤ 평생교육원	본회의장
11. 10.(금) 10:00	본회의 (9차)	1. 조례안 등 최종 의결	본회의장

2023. 10. 31.(화) 10:00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

- 제324회 임시회 -

권 영 기 의 원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권영기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동두천시에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년 주기로 지역의 관광 발전 정도를 판단하는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통보받은 「2021년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분석 결과보고서」에서 동두천시는 78.5점,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2019년(79.27점) 대비 0.97% 하락한 수치이며, 기초지자체 152개 중 143위입니다.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 동두천시는 지속적인 경제침체 상황 속에 인구감소 문제까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문화관광재단은 시민들이 고품격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기지촌의 오명을 벗어나 근대문화유산 관광도시로의 탈바꿈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동두천시의 문화 콘텐츠는 반복적이고 경쟁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평가없는 단체 수혜 성격의 반복적인 행사와 맥락 없이 산발적으로 열리는 행사, 공급형 행사 위주는 저조한 시민 참여율로 이어져 높아진 시민 눈높이에 문화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문화정책의 방향성과 철학의 부재로 개선 방안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제부터 동두천은 달라져야 합니다. 높아진 시민문화 눈높이에 맞춰 청년문화, 지역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문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먼저, 도시 문화정책의 방향과 철학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며,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행사를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공급자 활약을 위한 지원과 문화예술교육 다양화를 위한 지원과 동시에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별화된 문화정책으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특화 사업 성공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락 페스티벌, 디자인 아트빌리지 등 현재 동두천시 문화특화사업을 전문화하고 관광과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대표 콘텐츠를 창

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문화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은 순환보직 시스템 아래에서는 행정직 공무원들의 관광문화 전문 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화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문화관광 정책을 이끌어갈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0년 앞을 내다보는 관광문화정책을 설계하여 창조문화도시 또는 문화특화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국가 문화정책 사업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제안드립니다.

문화관광재단 설립은 앞서 말씀드린 동두천시 문화관광의 미래지향적 전략과 필요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대책입니다. 문화관광 전

문인력이 정부의 문예진흥기금 유치와 동두천시 관광산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되도록 빨리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신속한 추진을 제안합니다.

2014년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재정된 이후로 기초자치단체마다 문화재단설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문화재단을 설립하였거나, 설립 추진 중입니다. 지역문화를 진흥하고, 급변하며 확장하는 문화·예술·관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문화관광재단 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 분

석」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 수입의 1% 증가는 인구감소 지역 고용을 0.18% 증대시키고, 생산(GRDP)을 0.13%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통해 문화관광 행정의 창의성을 높이고, 급변하고 있는 문화관광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동두천시의 미래 경쟁력을 키워갑시다. 동두천의 문화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관광을 통해 타 지역은 물론 세계와 소통하고 브랜딩하는데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10. 31.(화) 10:00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

- 제324회 임시회 -

황 주 룡 의 원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을 위한 감동 의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박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 직필에 전념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황주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행역 3번 출구 인근 주택 및 상가지역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수립’과 ‘인·허가 관련 통합심의 활성화’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행역 3번 출구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시 등록 자동차는 2018년 38,381대에서 2022년 40,923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22 동두천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보고서’와 2023년 6월 ‘동두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변경) 및 중기계획’에 적재적소 공영주차장 확충 등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지금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행역 3번 출구 주변에는 추진 계획이 없었습니다.

현재 지행역 3번 출구 일대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동두천시 주차장 확충계획 및 공공시설 주차장 개방 반영, 노상주차장 건설 방안제시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정 주차공급 및 수요관리 정책이 부재합니다.

지행역 3번 출구 주변 '올리앤 지행점'부근에서 '33호 어린이공원' 인근 '어사랑' 식당까지는 편도 1차선으로, 여기에는 상가가 밀집한 데다 20여 개 원룸 및 다세대주택이 위치해 있어, 주차 환경 개선 지구 지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불법주차 차량으로 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면도로 상가를 걸을 때면 이것이 동두천의 현실인 것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시 집행부가 과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시 자료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 표출자료

지금 보신 것처럼, 폭 6미터가 넘는 이면도로인데도 도로 양쪽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자동차 교행이 힘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 등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단속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차량 소통과 안전을 위해서 단속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면도로 주차 현실은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족 문제는 단순히 시민 불편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등 응급차량의 통행이 어려워 화재 발생 등 비상시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어 더욱 심각합니다.

물론, 공영주차장 조성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 등에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차난으로 인하여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주셔서,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장기

적인 투자로써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에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첫째, 교행이 어려운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등 현실적인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행역 3번 출구 주변에 위치한 '33호 어린이공원'이나 '34호 어린이공원'과 같이 토지 보상이 필요 없는 공원 등의 지하를 입체화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에 서울 강남구에서는 도심지역인 역삼동 인근의 공영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삼문화공원' 부지를 활

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상부에는 공원을 만들어 주차난 해결과 시민 휴식 공간 확보라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시도 이와 같은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허가 관련 통합심의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개발행위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처리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개별 법령에 따른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심의 등의 복잡한 심의 과정으로 인한 절차 지연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물론,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일정한 개발행위나 공장설립 등에 관한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고, 「주택법」의 조문에 통합심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문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우리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통합심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나 제천시의 경우는 최근에 '주택건설 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하여 통합심의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잘 접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통합심의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활용하여, 인·허가 소요 기간의 단축과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행정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시민의 주차 불편은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특히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고, 본 의원이 제시한 상권 활성화와 균형을 이루는 공영주차장 대책 마련에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인·허가 관련 통합심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10. 31.(화) 10:00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

- 제324회 임시회 -

김 재 수 의 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재수 의원입니다.

지난 6월에, 결국 우리 시 인구 9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석 달 동안 6백 명 넘게 줄어들어, 9월 말 기준 8만 9천 선에서 턱걸이 중입니다.

인구 문제 해결은 두 가지 경로로 접근해야 합니다. 정주 요건 개선을 통한 유출 방지 및 유입 유도가 그 하나입니다. 이에 관해

본 의원은 지난 6월 1일, 제32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생산적인 인구 문제 대책 마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정주 요건 개선을 통한 '살기 좋은 매력 도시' 조성이 문제 해결의 본질이라는 점에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구감소 문제 해결의 다른 한 축은, 바로 '출생률 제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연달아 발생하여 나라 전체를 슬프게 만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김포 텃밭에서 발견된 생후 6일 영아 백골 시신,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과천 다운증후군 영아 암매장. 차마 입에 담거나 생각하기조차 참담한 일들이, 어쩌면 지금도 어디에선가 벌어질 수 있

다는 사실이 참 서글프기만 합니다.

최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은 2,236명에 이르고, 그중 34명은 사망했으며 782명은 소재가 불확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지난 6월 출생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이나 영아 유기 문제는, 결국 중앙정부와 수사기관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일이기는 합니다.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실종 아동을 추적·수사하는 것은, 개별 지자체 혼자의 힘으로는 분명 벅찬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다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산모가 안전하게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출생미신고 아동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룬, 지난 7월 14일 자 시사저널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출생미신고 아동, 원인은 빈곤·장애·공포"

거제와 김포에서 발생한 영아 살해·유기 사건의 범행동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양육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용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기는 '장애아'라는 이유로 버려졌습니다. 미혼모의 경우,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미성년 임산부의 경우는 '주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공포'가 그 주된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적어도 우리 동두천에서만큼은, 산모들이 이와 같은 '빈곤, 장애, 공포'로 인해 출산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침 바로 며칠 전인 10월 24일, 보건복지부는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천603명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8일까지는 우선 지자체별로 행정조사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정부의 방침에 따른 조사를 우리 시도 철저히 진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산모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우리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첫째, 병원이 아닌 가정 등 기타 장소에서 출산하는 경우, 즉 임시 신생아번호조차 발급이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주변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경우에는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직접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빈곤·장애·공포 등을 겪고 있는 산모들이 편하게 찾아와 상담과 건강 관리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

담센터를 보건소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출산을 기피할 수도 있을 산모들이 보건소 등 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둘째, 계속 추진 중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의 범위에 저소득층 취약 가정의 임산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임산부가 있는지, 그 상태는 어떠한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미리 실태를 시에서 파악하고 관찰과 상담을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담당 사업팀들로 T/F팀을 꾸리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여러 팀이 함께 협업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소와 여성청소년과,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그리고 민원봉사과 등의 소관 담당자들로 T/F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가 나서서 미리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위기상황에 처한 산모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 동두천에서만큼은 안전하게 안심하고 아이들을 낳아 키울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혼자 해결하고 떠안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는 우리 동두천시

가 같이 고민하고, 지원하고, 보호해서, 함께 양육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용중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5년 이내로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동두천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동두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외 2건의 조례에 규정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 (안 제1조~제3조)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수반상황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3. 8. 17.~9. 7.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 의견없음

○ 성별영향분석 평가 : 의견없음

□ **도 관련부서 : 경기도 예산담당관**

□ **현행조례 : 붙임**

동두천시 조례 제 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동두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동두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023년”을 “2028년”으로 한다.

제2조(「동두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개정)동두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023년”을 “2028년”으로 한다.

제3조(「동두천시 도시계획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의 개정) 동두천시 도시계획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2023년”을 “2028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동두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 2028년----------.

제2조(「동두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의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 2028년----------.

제3조(「동두천시 도시계획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의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특별회계 설치) ① ~ ③ (생 략) ④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특별회계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2028년 ----------.

붙임 1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재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1호, 2022. 11. 1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44-205-3707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붙임 2 **현행조례**

동두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 12. 31.]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028호, 2018. 12. 31., 일부개정]

경기도 동두천시(복지정책과), 031-860-235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6. 12.,20118.1.8.>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등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 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6.12.,2018.1.8.>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6.6.27, 2002.5.27, 2003.6.12, 2007.2.16, 2008.7.23, 2015.5.2.,20118.1.8.>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 6. 27.,2018.1.8.>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6. 6. 27>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6. 6. 27, 2003.6.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동두천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97. 1. 11>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서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제1분기 납입기일로 하여 매분기별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96. 6. 27>

1. 10만원미만 3회<개정 2003.6.12>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개정 2003.6.12>

3. 30만원이상은 12회<개정 2003.6.12>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 부터 1월 내지 6월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개정2003.6.12.,2018.1.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개정2003.6.12>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개정 2003.6.12>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액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개정 2003. 6. 12>

4.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개정 2003.6.12>

제8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서는 11월 15까지,해당연도 기금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각각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8.>[본조신설 97. 1. 11]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12월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18. 12. 3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7. 1. 11]

동두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 2020. 10. 8.]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161호, 2020. 10. 8., 일부개정]

경기도 동두천시(교통행정과), 031-860-229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31., 2017.1.31.>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개정 2017.1.31.>

2. 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12.12.31>

6.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7.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8. 도로교통법 제161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개정 2012.12.31>

9. 그 밖의 잡수입<개정 2017.1.31.>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차입금의 상환

3.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관리를 위탁 받은 자에 대한 관리 운영비의

일부 보조

4.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개정 2012.12.31>

5.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개정 2017.1.31.>

6.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내에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개정 2005. 1. 10>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 10. 8.>

제4조(준용) 이 회계의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동두천시 도시계획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시행 2020. 10. 8.]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161호, 2020. 10. 8., 일부개정]

경기도 동두천시(도시재생과), 031-860-237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종전의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도시계획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명칭) 이 사업의 명칭은 동두천시도시계획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칭한다.

제3조(사업지구 및 면적) 이 사업지구는 동두천시 생연동, 지행동, 송내동 등 일부지역으로서 사업 시행면적은 182,230㎡를 대상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 대상 토지와 면적등에 관하여는 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사업계획에 의한다. 다만, 도시계획의 변경결정으로 면적의 증감이 있을시에는 그 면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사업은 법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동두천시청내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

제6조(사업의 범위)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할,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지장물 정리 포함)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등 기타 관련된 모든 사업으로 한다.

제7조(비용부담) ①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토지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과 금액은 시행지구안에 있는 토지의 위치, 면적, 토질, 이용상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토지로서 부담한다.

제8조(사업비)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및 기타 잡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발주시 재원확보가 어려울 경우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대물변제할 수 있다.

제9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일로(이하 "인가일" 이라 한다)부터 3년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특별회계 설치) ①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동두천시도시계획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서 세출에 충당한다.

②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며, 세입에 부족이 생길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③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④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12월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 12.31.>

⑤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할 수 있다.<신설 2020. 10. 8.>

제11조(공고의 방법) ① 사업시행에 관한 공고는 공보 및 도내 지방신문사에서 발행 되는 일간신문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보 및 신문공고는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게시공고는 시청 및 사업 시행지구 관할동사무소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토지 및 지장물의 평가방법) ① 토지등의 가격평가는 법 제48조의2 및 영 제30조의2 규정에 의한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합리적인 환지계획이 되도록 동두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이하"토지평가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 사업에 수반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보상 가격의 결정은 제1항에 준한다.

③ 토지등의 평가 및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환지계획의 기준) ① 환지계획은 평가식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48조 내지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며 정리전·후의 평가지수에 의하여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한다.

② 환지는 가급적 종전 토지 위치에 환지를 원칙으로 하나 공공시설부지 또는 체비지로 지정될 경우에 한하여 비환지할 수 있으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비환지할 경우에는 이와 대등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비환지 할 수 있다.

③ 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환지계획한 한 필지의 기준면적 규모는 120㎡이상이어야 한다.

⑤ 1필지 대지는 반드시 도로 또는 통로에 접하도록 환지계획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통로가 없는 대지가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사도 또는 기타 공공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토지나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공익에 기여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교부될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환지계획 수립전에 증환지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증환지하여 교부할 수 있다. 또한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집단환지를 지정할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⑧ 사업지구안 동일소유자의 과소토지가 산재해 있을 경우 환지면적이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이를 합병하여 적정한 위치에 환지할 수 있다.

제14조(환지면적의 기준) 환지를 지정할 토지의 면적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토지(이하 "토지"라 한다)의 면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면적을 대상으로 한다.

1.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신규등록 또는 분할, 합병, 등록사항정정 한 토지의 면적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의 면적.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하였을때에는 그 면적, 특히 사업지구 전체에 대하여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불부합 토지는 실측면적.

제15조(특별지 환지) ① 도로, 구거, 묘지 등 타용도로 사용되었던 토지의 권리면적이 120㎡(기준면적) 미만인 토지와 상기외의 종전 토지면적이 기준면적 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택지로 증환지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와 공공시설 및 토공계획에 저촉되어 철거되는 건물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환지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종전토지의 면적이 광대한 토지는 시장의 필요에 따라 감환지하여 교부하고, 금전으로 이를 청산할 수 있다.

④ 권리면적이 기준면적 미만의 토지에 대하여는 증환지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유지분으로 환지할 수 있다.

⑤ 동일인 소유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하여 기준면적이상 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환지로 교부할 수 있다.

⑥ 종전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도 수인 공동명의로 합병환지 요구시 공동환지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환지지정의 위치) ① 환지는 종전 토지 위치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할당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수개의 구역으로 환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지면적이 기준면적에 미달할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할당구역에 합산하여 환지할 수 있다.

제17조(환지예정지의 사용) ①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예정지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용허가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환지예정지의 사용허가 후 사용중인 토지로 인해 사업지구내 공사와 관련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토지의 관리)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는 당해 토지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9조(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사업비에 충당되는 체비지는 도시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물 및 아파트 유치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체비지 및 공공시설용지 부담) 사업시행 후의 체비지 및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담할 토지면적은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의 부담방법은 사업시행전·후 토지의 위치 및 면적, 이용상황에 따른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각각의 부담면적을 결정한다.

제21조(체비지 대부료 등 부과·징수) 사업지구내 체비지의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청산금)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평정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증명 및 분할) ① 시장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에 대한 증명서 및 기타 제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으며,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예에 의한다.

② 환지예정지의 변경이나 분할은 공공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제24조(등기완료후의 통지) 시장은 법 제 65조의 규정에 의한 촉탁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등기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에게는 등기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25조(대리인 선정신고)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 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리인 선정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26조(주소·소유권등 변경신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법인) 및 그 대리인의 주소, 성명, 거소를 변경한때(별지 제4호서식)
2. 환지처분전에 지적법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때(별지 제5호서식)

제27조(신고의무 불이행자의 책임한계) 토지소유자가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생기는 제반손해에 대하여는 시행자는 일체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토지 소유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8조(측량대행) ① 시장은 공무원중 측량사 자격소지자가 없거나 기타 사무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측량대행 자격을 갖춘자(업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자의 사무 및 책임한계, 대행수수료, 보증금등 기타 대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동두천시 통장협의회 운영 경비 지원 조항 신설

○ 송내동 신규아파트 건설에 따른 세대수 증가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산동, 불현동, 소요동 통·반을 적정규모로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동두천시 통장협의회 운영 경비 지원(안 제10조)

- 시 통장협의회 운영 경비 지원 조항 신설

○ 통·반 조정(안 별표)

- 시 전체 : 157통 1,238반 → 159통 1,253반 (증 2통, 15반)
- 보산동 : 9통 43반 → 9통 44반 (증 1반)
- 불현동 : 40통 318반 → 41통 324반 (증 1통, 6반)
- 송내동 : 26통 293반 → 27통 300반 (증 1통, 7반)
- 소요동 : 17통 130반 → 17통 131반 (증 1반)

동두천시 조례 제　　호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두천시 통장협의회 운영 지원

5. 그 밖에 통장의 업무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정하는 사항

별표 중 보산동, 불현동, 송내동, 소요동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기진작) 시장은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제10조(사기진작) ---------- ---------- ---------- ----------. 1. ~ 3. (현행과 같음) 4. 동두천시 통장협의회 운영 지원
<신 설>	5. 그 밖에 통장의 업무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정하는 사항

[별 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8개동	**159통**	**1,253반**	
보산동	**9통**	**44반**	
보산동	1통	1반	보산동 428-2, 429-12
		2반	426, 426-2
		3반	425-1, 5
		4반	429-14, 33, 34
		5반	428, 429, 429-1~21, 61, 64~66, 69, 71, 72, 431-43, 59
		6반	418, 429-13, 436-2
		7반	429-3, 429-21, 430, 436-3, 437-11, 19
	2통	1반	442-1, 442-3~7, 441-4, 445-4, 447-1, 14, 448-2, 17, 32
		2반	448-28, 449, 449-1, 2, 5~9, 18, 19, 450-2, 451-9~16, 452-3~13, 455-4
		3반	459-48, 459-65, 459-1~40, 50, 51
		4반	458-8~13, 459-13~20, 25~28, 35~45, 54~57, 62, 63, 65~68, 74
		5반	458-6, 7, 20, 459-1, 7~12, 21~24, 29~34, 58, 69~73, 460-20, 22~24, 26
	3통	1반	404, 404-64~65, 67, 410-8~10, 410-14, 410-29, 410-31, 412-5, 412-13~14, 412-18, 412-25~27, 412-39, 412-43, 412-43, 412-52
		2반	407-2, 407-4, 410-1, 410-51, 410-54, 411-2~3, 412-1~2, 412-41, 412-44, 412-47~49, 412-63~66, 412-79, 413-25
		3반	365-8~10, 365-15, 365-34, 365-37~40, 36552, 365-55~56, 365-87, 365-90, 365-95, 404-3~4, 404-7~9, 404-21~22, 413-1, 413-3~5, 413-7, 413-12, 412-3, 412-6, 412-8~12, 412-17, 412-20~23, 412-38, 412-70~71

동 명	통 명	반 명	관 할 구 역
		4반	404-51~53, 404-55, 404-59, 404-62, 404-109, 407-2~5, 407-9~14, 407-17~20, 407-24, 407-26, 407-37~38, 407-45~47, 407-50~51, 407-54, 408, 408-2, 408-4~10, 408-13~15, 408-19~20, 409, 409-1, 410-7, 410-11~13, 410-16~17, 410-20, 410-22~23, 410-26, 410-34~35, 410-45, 410-56
	4통	1반	366-3~5, 366-7~9, 366-18, 367-2~3, 368-7~8, 378-2~4, 379-2~3, 379-5~8, 379-10, 381-5~7, 381-9~10, 381-13, 381-18, 381-23
		2반	366-3, 366-10~16, 366-19~21, 366-30, 367-6, 368-14, 368-32, 368-40, 370-2, 376-3~4, 376-12, 379-1, 380-3~5, 380-8~9, 381-1~3, 381-6, 381-8, 386-5, 386-7~10
		3반	381-7, 382-1~2, 382-4, 382-9, 383-1, 383-4, 384-3~6, 384-10~11, 385-3~4, 400-6, 400-14, 400-23, 400-26~28, 400-31, 400-34, 401, 404-26, 404-28, 404-29, 404-31~33, 404-42~43, 404-110, 402-1
		4반	368-6, 368-9~10, 368-12, 370-16~20, 370-23, 375-1, 376-6, 376-8, 376-10, 376-20, 390-3~5, 390-24
		5반	370-5, 376-14, 376-17, 376-19, 384-1~2, 384-7~9, 384-12 385-1, 385-9, 387-1~2, 387-4~5, 387-7, 387-10, 388-1, 388-3~8, 388-11, 388-13~14, 388-17, 388-23, 390-2, 390-8~9, 390-11, 390-13, 390-17, 400-2~3, 400-11, 400-13, 404-36, 404-38
		6반	395-4, 396-1~3, 396-9, 396-12, 397-1~3, 397-5~7, 397-9~12, 397-15, 397-19, 397-23, 397-25~27, 400-40~41

동 명	통 명	반 명	관 할 구 역
보산동	5통	1반	400-1(101동)
		2반	400-1(102동)
		3반	400-1(103동)
		4반	400-1(104동)
		5반	403-2, 404, 404-55, 404-77, 404-79, 404-86, 404-89, 404-90~91, 405, 405-3, 406-6, 407-48~49 407-53
	5통	6반	403-9~10, 404-80
	6통	1반	101-9~10, 108-2, 108-6~7, 109-3, 293-2
		2반	304-32(101동)
		3반	304-32(102동)
		4반	304-32(103동)
		5반	304, 305, 116-6
	7통	1반	걸산동 26, 50~51, 60, 73~75, 산82, 산100~102
		2반	걸산동 93, 102-1~2, 104, 107, 111~112, 184~185, 188~190
	8통	1반	보산동 353, 354, 358
		2반	317, 359
		3반	393, 397
		4반	366, 368
		5반	304-4, 307, 312, 313
	9통	1반	365, 368
		2반	362 ~ 364
		3반	362, 417, 438
		4반	358 ~ 363, 417

동 명	통 명	반 명	관 할 구 역
불현동	41통	324반	
불현동	1통	1반	생연동 426
		2반	445, 635
		3반	444, 444-4, 726-1, 723, 725, 727, 727-1~11, 13, 16, 728, 730
		4반	725-1, 13, 15~21, 31
		5반	427
	2통	1반	424
		2반	413, 418, 422
		3반	730
		4반	361
		5반	361
		6반	736, 742-744
		7반	745,754
		8반	755
		9반	728, 755, 747
	3통	1반	생연동 404-1, 34, 406-1, 6, 12, 13, 407-1, 2, 3, 8, 21, 23, 24, 408, 409, 410, 410-1~2, 411-1, 9, 431-11, 20, 22, 산49, 산51-1
		2반	생연동 392-36~37, 401-4, 5, 402, 402-9, 403, 403-4~6, 403-8, 404-2~8, 404-11~13, 404-15~19, 24, 26, 28, 30, 404-35~41, 405-1, 2, 4, 8, 9, 10, 12, 17, 406, 406-4, 11, 407-20, 26, 431-8, 17, 24
		3반	403-1, 근남아파트
		4반	278, 279, 403-3
		5반	242, 243-1, 2, 4, 6, 8, 10, 246-3, 32, 33~38, 268-3, 272, 272-4~10
		6반	273-4, 276 은혜주택 1,2,4동
		7반	273, 273-2, 은혜주택 3동
		8반	268, 268-3, 270-6, 271, 283-3, 6, 284-1, 285-1, 286, 287-1~27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
불현동	3통	9반	생연동 282-45 대진아파트
		10반	282-1 대진빌라
		11반	276-5, 280-2, 281
		12반	276-2, 280
	4통	1반	244, 244-4~6, 246-2~10, 13, 32, 247-2, 248, 250, 254-3, 255, 257, 258, 259-4
		2반	247, 247-4
		3반	251
		4반	251
		5반	251
		6반	251
		7반	246-1, 246-20
		8반	86, 249-2, 250, 산61, 산61-1,2
		9반	88, 89, 산61-3, 4, 5
	5통	1반	85
		2반	85
		3반	85
		4반	85
		5반	85
		6반	85
		7반	85
		8반	85
		9반	85
	6통	1반	60~72, 72-1, 73~83, 90~93, 252, 254-2,5, 256, 260, 263, 264-1, 5, 8, 10, 11, 265,266-1,2, 268, 268- 2, 3, 6, 269, 289-2, 253, 254, 255, 258, 261, 262, 264, 268-20, 266, 산62-10, 산65, 산72-1,2, 산73, 산74, 산82

동 명	통 명	반 명	관 할 구 역
불현동	6통	2반	생연동264
		3반	264
		4반	264
		5반	259
		6반	247
		7반	245-3
		8반	245-4
		9반	245-5
		10반	263-1
		11반	263-1
	7통	1반	296-1
		2반	296-1
		3반	296-1
		4반	296-1
		5반	296-1
		6반	296-1
		7반	296-1
		8반	296-1
		9반	296-1
	8통	1반	268-5, 6
		2반	268-5, 6
		3반	268-5, 6
		4반	268-5, 6
		5반	268-5, 6

동 명	통 명	반 명	관 할 구 역
불현동	8통	6반	생연동268-5, 6
		7반	268-28, 29
	9통	1반	397, 398, 400, 499
		2반	306, 307, 389, 396, 산82, 산83
		3반	305
		4반	328, 329-1, 4, 330~332, 334, 339, 388, 390, 394, 395, 395-1, 3, 396, 산104-2
		5반	369, 374~376, 378~381, 383, 384, 385-2, 3, 385-5~10, 385-13~17
		6반	309
		7반	317
		8반	317-14
		9반	322-15, 16
		10반	314-2
	10통	1반	285
		2반	285
		3반	285
		4반	285
		5반	285
		6반	285
		7반	285
		8반	285
		9반	285
		10반	285
		11반	285

동 명	통 명	반 명	관 할 구 역
불현동	10통	12반	생연동285
		13반	285
		14반	285
	11통	1반	334-1
		2반	334-1
		3반	334-1
		4반	334-1
		5반	334-1
		6반	334-1
		7반	334-1
		8반	334-1
		9반	334-1
		10반	334-1
		11반	334-1
	12통	1반	335, 342-5
		2반	335
		3반	335
		4반	335
		5반	335
		6반	335
		7반	335
		8반	340-7
		9반	340-7
		10반	340-7

동 명	통 명	반 명	관 할 구 역
불현동	12통	11반	생연동340-7
		12반	340-7
	13통	1반	349-1, 350
		2반	350
		3반	350
		4반	350
		5반	350
		6반	350
		7반	350
		8반	350
		9반	350
	14통	1반	351, 352
		2반	352
		3반	352
		4반	352
		5반	352
		6반	352
		7반	352
	15통	1반	356
		2반	356
		3반	356
		4반	356
		5반	356
		6반	356

동 명	통 명	반 명	관 할 구 역
불현동	15통	7반	생연동356
		8반	356
		9반	356
		10반	356
		11반	356
	16통	1반	359-2, 360-2, 7, 19
		2반	359-2, 360-2, 7, 19
		3반	359-2, 360-2, 7, 19
		4반	359-2, 360-2, 7, 19
		5반	359-2, 360-2, 7, 19
	17통	1반	362-4, 363-2
		2반	362-4, 363-2
		3반	362-4, 363-2
		4반	362-4, 363-2
		5반	지행동 275-4~5
		6반	274
		7반	273-2~5, 7~10, 13~16, 19, 275-10, 11
		8반	275-3, 12~21, 276-1
	18통	1반	270-4
		2반	270-4
		3반	270-4
		4반	270-4
		5반	270-4
		6반	270-4

동 명	통 명	반 명	관 할 구 역
불현동	18통	7반	지행동270-4
		8반	270-4
		9반	270-4
	19통	1반	270-3
		2반	270-3
		3반	270-3
		4반	270-3
		5반	270-3
		6반	270-3
		7반	270-3
		8반	270-3
		9반	270-3
		10반	270-3
		11반	270-3
		12반	270-3
		13반	270-3
		14반	270-3
	20통	1반	292-4
		2반	283, 292, 293, 302, 383
		3반	283, 292, 293, 302, 383
		4반	283, 292, 293, 302, 383
		5반	283, 292, 293, 302, 383,
		6반	283, 292, 293, 302, 383
		7반	283, 292, 293, 302, 383

동 명	통 명	반 명	관 할 구 역
불현동	20통	8반	지행동283, 292, 293, 302, 383
		9반	294
		10반	290, 294, 295, 302, 303, 306
		11반	298, 299
		12반	300
		13반	284-27, 285,
	21통	1반	282-5
		2반	282-5
		3반	282-5
		4반	282-5
		5반	282-5
		6반	282-5
		7반	282-5
		8반	282-3
		9반	282-3
		10반	282-3
	22통	1반	286-8~15, 338-1, 339-2, 4, 5, 340, 341, 351-2, 6, 7, 10, 11, 19, 352, 478~479, 504, 518~521
		2반	258, 310, 318, 329, 373, 374
		3반	31, 41, 75, 77, 79, 80, 81, 221, 226, 230, 238, 241, 245, 248, 285, 432
		4반	339-1, 342-1
		5반	334-1, 3, 11~18, 20, 21, 28, 29, 30, 335
		6반	282, 284-1, 2, 16~20, 26, 285-1, 286, 286-1, 5, 6, 16~30, 292-12, 15, 328-1, 3, 330-9~12, 332, 333, 334-2, 4~8, 23, 24, 389-2, 3, 531~532, 552, 산2

동 명	통 명	반 명	관 할 구 역
불현동	23통	1반	지행동 344, 344-7
		2반	344-8, 344-9
		3반	343-1, 343-2, 343-4, 343-9, 349-1
		4반	350-1, 350-10, 350-11, 350-12, 350-13, 350-15, 350-16, 350-17, 350-19, 350-21, 350-22, 350-23, 350-24, 350-25, 350-26, 350-27, 350-28, 350-29, 350-30, 350-31, 350-34, 350-35, 350-36, 368-2
		5반	368-9, 372, 381-6, 380-1, 388-3, 388-2
	24통	1반	406-11, 21, 22, 407-1, 6, 8~12, 47
		2반	407-1, 13, 16, 19, 20, 22~25, 34, 35
		3반	407-38, 39, 42, 49, 50, 52, 53
		4반	406-12, 15, 18, 34, 45, 56~58
		5반	406-31, 42, 63~68, 77, 78
		6반	394-3~6, 400-2, 5, 7~15, 403-2, 404-7
		7반	406, 407, 474~477
		8반	404-1, 404-4~6, 404-10, 404-15
	25통	1반	광암동190~194, 195-1, 198, 498-1, 2, 13, 14, 36, 38, 51, 502, 503, 506
		2반	496~498, 498-20, 500~502, 510, 512
		3반	495, 496, 497-22, 511, 512-7, 17, 19, 21
		4반	188, 189, 505~510, 512-8, 513, 514, 산104, 산106
		5반	511, 512, 5122, 9, 15, 515~520, 산103, 산104

동 명	통 명	반 명	관 할 구 역
불현동	26통	1반	198
		2반	494
		3반	198, 494
		4반	493, 494
		5반	486, 493, 494
	27통	1반	494
		2반	494
	27통	3반	광암동486
		4반	484, 485, 487
		5반	477~481, 482-1, 2, 483-1, 2, 3, 484, 484-1, 2, 485-14
		6반	산97-4
		7반	산97-4
		8반	476
		9반	476
	28통	1반	487
		2반	486, 487
		3반	466-6, 470-2, 471, 471-8, 15, 19, 26, 27, 29, 30, 33, 472, 472-29, 30, 31, 525
		4반	471, 472
		5반	산93-2
	29통	1반	175~185
		2반	168~179
		3반	162
		4반	162~210
		5반	산43
		6반	산43~202

동 명	통 명	반 명	관 할 구 역
불현동		7반	224~261
		8반	광암동49~100
	30통	1반	탑동동 381, 395, 410, 432, 445, 482, 501, 546, 590
		2반	탑동동 610, 643, 695
		3반	688, 692, 695, 704, 705, 713, 714, 720, 726, 735, 740, 751, 756
	31통	1반	891, 893, 895, 898, 899
		2반	700, 703, 706, 709, 710
		3반	800, 805, 816, 825, 832, 842, 859, 871, 889
		4반	900, 906, 912, 921, 927, 937, 941, 943
		5반	762
	32통	1반	425, 430, 456, 614, 620, 515, 545, 582, 613, 652
		2반	400, 408, 414, 417, 418, 420
	33통	1반	150~156, 186~380
		2반	181~183
	34통	1반	1~149, 184, 185
		2반	157~180, 182
	35통	1반	지행동 354
		2반	354
		3반	354
		4반	354
		5반	354
		6반	354
		7반	354
		8반	354
		9반	354
		10반	354
		11반	354

동 명	통 명	반 명	관 할 구 역
불현동	36통	1반	생연동 831
		2반	831
		3반	831
		4반	831
		5반	831
		6반	831
		7반	831
	37통	1반	267, 268, 269, 270(-4, -5, -6, -14, -15제외), 산 2-1, 산7
		2반	303-1, 3, 5, 304, 305, 306, 307, 312-10, 312-13, 산10-1
		3반	308
		4반	308
		5반	308
		6반	308
		7반	308
		8반	308
		9반	330, 330-4～7, 313-3, 4, 314-4, 315, 315-5, 323, 324, 325
	38통	1반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2반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3반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4반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5반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6반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7반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39통	1반	생연동 832
		2반	생연동 832
		3반	생연동 832
		4반	생연동 832
		5반	생연동 832
		6반	생연동 832
		7반	생연동 832
		8반	생연동 832

동 명	통 명	반 명	관 할 구 역
불현동	40통	1반	지행동 196
		2반	196
		3반	196
		4반	196
		5반	196
		6반	196
		7반	196
	41통	1반	지행동 356-3, 356-8, 356-9, 356-10, 356-11
		2반	357-3, 358-4, 358-6
		3반	358, 358-2
		4반	351-21, 359, 359-2, 359-4
		5반	186-12, 186-13, 385, 357-5, 357-8, 387-5, 357-7, 397
		6반	13, 101, 104, 105, 106, 134, 139, 152, 153, 181, 183, 193, 66-2, 21-2, 142-2, 142-2, 143-2, 144-4, 159-2, 163-4, 163-6, 165-1, 165-4, 165-5, 169-1, 181-1, 184-1, 186-10, 186-11, 186-14, 186-9, 204-2, 204-3, 207-1, 207-10, 207-12, 207-19, 207-20, 207-22, 207-23, 207-24, 207-25, 207-26, 207-28, 207-5, 207-6, 207-8, 207-9, 375-2

동 명	통 명	반 명	관 할 구 역
송내동	27통	300반	
송내동	1통	1반	송내동289, 290, 315, 323, 324, 384
		2반	114, 116, 117, 118, 281, 294, 298, 299, 300, 302, 305, 306, 307, 309
		3반	120~124, 128, 129, 130, 132, 133
		4반	138, 149, 155, 156, 158, 161, 162, 164, 산1
	2통	1반	341, 344, 345, 349, 351, 352, 383, 414, 415, 419
		2반	440, 486, 487, 489
		3반	490, 491
		4반	343, 492, 575, 576, 577
		5반	215, 221, 223, 230~233
		6반	571~574, 582
		7반	593-3, 6, 12, 15~19, 20,~26, 28, 29, 32
		8반	384, 394, 395, 408, 409, 425
		9반	198, 200, 201
	3통	1반	송내동 494, 496, 499
		2반	517, 518, 532, 533, 550, 555
		3반	666, 668, 692~693, 684~684-6, 685~668
		4반	669, 672, 677~677-3, 678~678-2, 679~683, 684-7~684-13
		5반	673~675, 677-4~677-7, 678-3~678-5, 693-1~695
	4통	1반	696-3
		2반	696-3
		3반	696-3
		4반	696-3
		5반	696-3
		6반	696-3
		7반	696-3
		8반	696-3
		9반	696-3
		10반	696-3, 698-5

동 명	통 명	반 명	관 할 구 역
송내동	5통	1반	696-3
		2반	696-3
		3반	696-3
		4반	696-3
		5반	696-3
		6반	696-3
		7반	696-3
		8반	696, 696-1~4, 697, 698-2, 3
	6통	1반	665-6
		2반	665-6
		3반	665-6
		4반	송내동665-6
		5반	665-6
		6반	665-6
		7반	665-6
		8반	665-6
		9반	665-6
		10반	665-6, 8, 9
	7통	1반	665-3
		2반	665-3
		3반	665-3
		4반	665-3
		5반	665-3
		6반	665-3
		7반	665-3
		8반	665-3
		9반	665-3
		10반	665, 665-1~5, 698-1
	8통	1반	665-6
		2반	665-6
		3반	665-6
		4반	665-6
		5반	665-6
		6반	665-6
		7반	665-6

동 명	통 명	반 명	관 할 구 역
송내동	8통	8반	송내동665-6
	9통	1반	665-6
		2반	665-6
		3반	665-6
		4반	665-6
		5반	665-6
		6반	665-6
		7반	665-6
		8반	665-6
		9반	665-6
		10반	665-6
		11반	665-6
		12반	665-6, 7
	10통	1반	664-5, 6, 7, 10, 698-1
		2반	664-6
		3반	664-6
		4반	664-6
		5반	664-6
		6반	664-6
		7반	664-6
		8반	664-6
		9반	664-6
		10반	664-6
		11반	664-6

동 명	통 명	반 명	관할구역
송내동	10통	12반	송내동664-6
		13반	664-6
		14반	664-6
		15반	664-6
		16반	664-6
		17반	664-3, 6
	11통	1반	664-6, 7
		2반	664-6
		3반	664-6
		4반	664-6
		5반	664-6
		6반	664-6
		7반	664-6
		8반	664-6
		9반	664-6
		10반	664-6
		11반	664-6
		12반	664-6
		13반	664-6
		14반	664-6
		15반	664-2, 6, 9
	12통	1반	651-3, 9, 656-8, 657-5, 659-1, 5, 7
		2반	664-4
		3반	664-4

동 명	통 명	반 명	관 할 구 역
송내동	12통	4반	송내동664-4
		5반	664-4
		6반	664-4
		7반	664-4
		8반	664-4
		9반	664-4
		10반	664-4
	13통	1반	지행동 722-8
		2반	722-8
		3반	722-8
		4반	722-8
		5반	722-8
		6반	722-8
		7반	722-8
		8반	722-8
		9반	722-8
		10반	722-8
		11반	718-5, 719-4, 720, 721, 721-1~4, 722-2~4, 7, 8, 10, 723, 724, 725-1, 3~6
	14통	1반	722-5
		2반	722-5
		3반	722-5
		4반	722-5
		5반	722-5
		6반	722-5

동 명	통 명	반 명	관 할 구 역
송내동	14통	7반	지행동722-5
		8반	722-5
		9반	722-5
		10반	722-5
		11반	722-5
		12반	722-5
		13반	722-5
		14반	722-5
		15반	722-5
		16반	722-5
		17반	718, 718-1~4, 719, 719-1~3, 722, 722-1, 5, 6, 9, 725-2, 7
	15통	1반	717-2
		2반	717-2
		3반	717-2
		4반	717-2
		5반	717-2
		6반	717-2
		7반	717-2
		8반	717-2
		9반	717-2
		10반	717-2
		11반	717-2
		12반	717-2
		13반	717-2

동 명	통 명	반 명	관 할 구 역
송내동	15통	14반	지행동717-2
		15반	지행동 717-2
		16반	717-2
		17반	717-2
		18반	717, 717-1, 2, 8, 10, 725
	16통	1반	717-2
		2반	717-2
		3반	717-2
		4반	717-2
		5반	717-2
		6반	717-2
		7반	717-2
		8반	717-2
		9반	717-2
		10반	717-2
		11반	717-2
		12반	717-2
		13반	717-2
		14반	717-2
		15반	717-2
		16반	717-2
		17반	717-2
		18반	717-2
		19반	716, 717-2, 3, 4, 9

동 명	통 명	반 명	관 할 구 역
송내동	17통	1반	지행동717-2
		2반	717-2
		3반	717-2
		4반	717-2
		5반	717-2
		6반	717-2
		7반	지행동 717-2
		8반	717-2
		9반	717-2
		10반	717-2
		11반	717-2
		12반	717-2
		13반	717-2
		14반	717-2
		15반	717-2
		16반	717-2, 5~7
	18통	1반	692, 692-1
		2반	692-1
		3반	692-1
		4반	692-1
		5반	692-1
		6반	692-1
		7반	692-1
		8반	692-1

동 명	통 명	반 명	관 할 구 역
송내동	18통	9반	지행동692-1
		10반	692-1
		11반	692-1
		12반	692-1, 5, 696, 705, 715
	19통	1반	692-3
		2반	692-3
		3반	692-3
		4반	692-3
		5반	692-3
		6반	692-3
		7반	692-3
		8반	692-3
		9반	692-3
		10반	692-2~4
	20통	1반	692-6
		2반	692-6
		3반	692-6
		4반	692-6
		5반	692-6
		6반	692-6
		7반	692-6
		8반	692-6
		9반	692-6
		10반	692, 692-5~8, 693~695, 712~714, 716

동 명	통 명	반 명	관 할 구 역
송내동	20통	11반	지행동 424~430, 452~460, 462~463, 480~483, 486-3, 522~528, 533~539, 412-1, 423, 461-2, 464-1, 746-3, 748-1, 송내동 408-3, 409, 409-1, 409-2, 409-3, 409-5, 409-7, 410, 411, 464-5, 466-5, 467, 468-1, 469, 470, 471-1
	21통	1반	691-1, 3
		2반	691-3
		3반	691-3
		4반	691-3
		5반	691-3
		6반	691-3
		7반	691-3
		8반	691-3
		9반	691-3
		10반	691-3
		11반	691-3
		12반	691-3
		13반	691-3
		14반	691-3
		15반	691-3
		16반	691-3
		17반	691-3
		18반	691-3
		19반	691-3
		20반	691-3
		21반	691-4, 5
	22통	1반	691
		2반	691

동 명	통 명	반 명	관 할 구 역
송내동	22통	3반	지행동691
		4반	691
		5반	691
		6반	691
		7반	691
		8반	691
		9반	691
		10반	691
		11반	691
		12반	691
		13반	691
		14반	691
	23통	1반	679, 679-1～3, 680, 680-1～2
		2반	681, 681-1～10, 684, 684-1～6
		3반	682, 682-1～10, 683, 683-1～8
		4반	685, 686, 686-1～5, 687, 687-1, 687-5～9
		5반	688, 688-1～7
		6반	689, 689-1～7, 690, 690-1～2

동 명	통 명	반 명	관 할 구 역
송내동	24통	1반	송내동 699～699-10, 700～701-4
		2반	699-11～699-15, 702～703-1
		3반	703-2～709-13
	25통	1반	지행동 660-1～4, 661, 661-1～4, 662, 662-1～5, 663, 663-1～7, 664, 664-1～6
		2반	665, 665-1～4, 667, 667-1～9, 668, 673, 673-1～5
		3반	666, 666-1～4, 669, 669-1～9, 670, 670-1～9, 671, 671-1～4, 672, 672-1～2
		4반	지행동 674, 674-1～5, 675, 675-1～7
		5반	676, 676-1～9
		6반	677, 677-1～9
		7반	678, 678-1～7
	26통	1반	664-1, 송내행복주택 (101동, 1-2라인)
		2반	664-1, 송내행복주택 (101동, 3-4라인)
		3반	664-1, 송내행복주택 (102동, 1-2라인)
		4반	664-1, 송내행복주택 (102동, 3-4라인)
		5반	664-1, 송내행복주택 (103동, 1-3라인)
		6반	664-1, 송내행복주택 (103동, 4-6라인)
		7반	664-1, 송내행복주택 (103동, 7-8라인)
		8반	664-1, 송내행복주택 (103동, 9-10라인)
		9반	664-1, 송내행복주택 (103동, 11-12라인)
		10반	664-1, 송내행복주택 (103동, 13-14라인)

동 명	통 명	반 명	관 할 구 역
송내동	27통	1반	지행동 691-2, 지행역센트레빌(101동, 1-4라인)
		2반	지행동 691-2, 지행역센트레빌(102동, 1-2라인)
		3반	지행동 691-2, 지행역센트레빌(102동, 3-4라인)
		4반	지행동 691-2, 지행역센트레빌(103동, 1-4라인)
		5반	지행동 691-2, 지행역센트레빌(104동, 1-2라인)
		6반	지행동 691-2, 지행역센트레빌(104동, 3-4라인)
		7반	지행동 691-2, 지행역센트레빌(105동, 1-2라인)

동 명	통 명	반 명	관 할 구 역
소요동	**17통**	131반	
소요동	1통	1반	동두천동 233-4, 234, 498, 502, 506, 514, 519
		2반	219, 220, 230, 245
		3반	219, 220
		4반	528 ~ 531
		5반	523-1, 523-21
		6반	527, 527-1
		7반	519-5
		8반	519-5
	2통	1반	529, 530
		2반	530, 531, 532
		3반	210
		4반	210, 211
		5반	206, 207, 210
		6반	206, 207, 208, 210
		7반	206, 207, 210, 217
		8반	208-10
		9반	217
		10반	214-1
		11반	209-5
		12반	217
	3통	1반	동두천동 205, 245
		2반	245
		3반	245
		4반	201 ~ 204
		5반	200, 201, 245
		6반	245
		7반	198, 199, 245
		8반	198, 245, 252
		9반	198, 245

동 명	통 명	반 명	관 할 구 역
소요동	4통	1반	92
		2반	92
		3반	92, 137, 285
		4반	137, 285
		5반	282-1, 8, 283-1, 2, 284-1, 2, 4, 285-4, 285-11~15, 288-5
		6반	142, 142-2~10, 143, 143-1~7, 268, 269-1~5, 270, 272-2~6, 산50, 산51, 산52
		7반	283, 284, 285, 291
		8반	279, 285
		9반	136-1~5, 8~12, 281-1~4
		10반	132-3, 7, 138-11~17
	5통	1반	345, 349
		2반	345, 349
		3반	22, 159, 345, 산3
		4반	345
		5반	345
		6반	345, 348
		7반	345, 348
		8반	345, 348
		9반	32, 37, 산3
		10반	345
		11반	315, 315-4～28, 328, 329, 329-2, 330, 331, 337, 342, 342-4, 344～346, 411, 414, 424, 445, 446, 456
	6통	1반	동두천동 524
		2반	524
		3반	524
		4반	524
		5반	524
		6반	524
		7반	524-1
		8반	524-2

동 명	통 명	반 명	관 할 구 역
소요동	6통	9반	524-2
		10반	524-2
		11반	524-2
		12반	223-6, 223-8, 223-39, 223-42, 224-14, 224-19, 224-25, 525, 525-2, 525-4, 525-5
	7통	1반	안흥동 38, 40, 42, 44, 56, 57, 71
		2반	42, 44, 57
		3반	42, 56, 57, 58, 120
		4반	42, 56, 57, 58, 120
		5반	42, 43, 44
		6반	42, 43, 44
		7반	43-1
		8반	70, 71
	8통	1반	42, 63, 71, 72, 73
		2반	38, 58
		3반	31, 46, 57, 99, 104, 109, 120, 193, 199
	9통	1반	4, 9, 172
		2반	9, 16, 133, 136, 138, 139, 172
	10통	1반	371, 383, 388, 393, 403, 404, 410, 437
		2반	388, 393, 397, 404, 409, 410, 426
		3반	403, 470, 410, 426, 427, 428, 431, 437
		4반	230, 296, 306, 307, 336, 366, 437, 453
	11통	1반	상봉암동 1, 2, 3, 4, 산1-1
		2반	134-1 ~ 10, 135, 136
		3반	128, 129, 131, 132-2, 3, 139
		4반	137-1 ~ 10
		5반	9, 140, 142, 146 ~ 152, 154 ~ 159
		6반	132-15, 16, 133, 138, 139
		7반	132-4, 132-24
		8반	153

동 명	통 명	반 명	관 할 구 역
소요동	12통	1반	119, 120
		2반	122-21, 122-30, 125
		3반	91-20~34, 92
		4반	122-1~20
		5반	90-1~19
	13통	1반	상봉암동 187, 347~379
		2반	207, 208, 231~234, 243, 244
		3반	321~329
		4반	245, 260-1~4, 262~266
	13통	5반	260-5, 260-6, 261, 265~269
		6반	270~285
		7반	229, 231, 232, 234~236, 237-1, 3, 5~25, 238, 285, 286
		8반	173, 174, 175-1, 177-1, 3, 4, 181-1, 189-3, 193-3, 217-2, 3, 4, 8, 15, 16, 18~25, 222-1, 3
		9반	285-5~8, 10, 12
		10반	238-1, 4~13
		11반	229-4, 237-1, 14~17, 285-2, 14, 15, 17~21, 286, 286-1, 2, 4~9, 12, 13, 16, 17, 19, 21, 22
		12반	237-19~25, 274-1~7, 9
		13반	236-1~9, 11~15, 237-3, 5, 7, 9, 10~14
		14반	226-1, 2, 7~13, 16, 227, 228-3
		15반	111-1, 112-3
	14통	1반	하봉암동 318-1~5, 318-23~26, 319-1, 320-1~4, 321
		2반	318-6~22, 319-2~10, 320-5~9
		3반	48~70, 77~80
		4반	1~9, 70~76, 92~159

동 명	통 명	반 명	관 할 구 역
소요동	15통	1반	44, 316
		2반	45, 314
		3반	313
		4반	10, 10-2, 11, 12, 13-1~5, 14, 15, 16-3, 17-1~6, 18-1~2, 19-1~3, 20, 21, 22
		5반	33, 35
		6반	30, 314-8~11, 316, 317, 318
		7반	16-1, 16-4~7
		8반	16-8~12
	16통	1반	하봉암동 187, 188, 213~221
		2반	190~197, 211, 212
		3반	198~206
		4반	261~264
		5반	265~269, 390~394
		6반	296, 297, 300, 329, 340
	17통	1반	상봉암동 15~33, 68, 70, 85
		2반	33~35, 38
		3반	69-5
		4반	69-5
		5반	69-5
		6반	39, 61~66

붙임 1 현행조례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자치행정과), 031-860-208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통에 반을 둔다.

제3조(확정기준) 통은 5개반 이상 12개반 이하로, 반은 30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① 통에 통장을,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장은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이상의 사람으로서 국가관과 애향심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③ 반장은 국가관과 애향심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해당 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을 통장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위촉한다.

④ 통·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임기가 끝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 6월 30일

2. 임기가 끝나는 날이 7월에서 12월 사이: 12월 31일

⑤ 통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한다. 다만,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결과 신청자가 없을 경우 지역주민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통장을 위촉한다.

⑥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통·반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때

2. 3월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통·반장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제6조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로 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4. 통 관할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하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때

제5조의2(명예반장) ①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며 해당 반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당해 통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다.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2개월, 윤번제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명예반장은 동장 또는 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상회 개최 장소를 제공하고 새마을운동을 주도한다.

2. 반상회에서 국가시책 또는 시국관에 관한 좌담을 주도한다.

3. 반상회의 날에는 반장과 함께 반원집을 순방하며 반장과 참석을 권유한다.

4. 반원의 요구사항을 집약 조정하고 대변한다.

5. 반장의 활동에 자문역을 담당한다.

6. 행정시책의 홍보원으로 활동한다.

제6조(임무) 통·반장은 동장 또는 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계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및 지원

6.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 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신설 2016.4.11.>

10.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 1.31.>

제7조(회의) ① 매월 25일은 정례반상회의 날로 정하고 명예반장 또는 반장집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반장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제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

는 아니된다.

제9조(편의 제공) 통·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의 무료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사기진작) 시장은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모범 통·반장의 우수자치단체견학, 연수 등
2. 통장에 대한 상해보험가입 , 체육대회 개최
3. 동장이 추천한 우수 통·반장 및 임기가 만료되어 위촉 해제된 통장에 대한 표창 수여

제11조(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금품의 징수의 금지) 통·반장은 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10.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호우 피해」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안 통보(행안부, '23. 7. 20.)됨에 따라,

○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감면대상 :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

이하 “유가족”이라 함)

○ 감면세목 : 자동차세,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재산세

□ 감면동의안 : 붙임 1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2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 의거,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한한다.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 이하 “유가족”이라 함)

2. 감면내용

제1조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2조 주민세

-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면제한다.

제3조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3. 기타

제1조 ~ 제3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붙임2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생략)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⑧ ~ ⑨ (생략)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531호, 2020.3.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에 따른 경우로서, "재해"의 사전적 의미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따위에 의하여 받게 되는 피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반드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의한 "자연재난" 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아니한 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도 포함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임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금액을 변경함으로써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중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한 표준금액 및 수수료에 맞추어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전자파일의 복제 1건마다 5,000원에서 1GB마다 800원)

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 51개 항목의 세분화.

동두천시 조례 제 호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1. 증명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가. 신상에 관한 증명			
1)부양가족사실확인원	1건	1,000원	
2)국제결혼증명	1건	3,000원	
나.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각종신고 및 등록필	1통	1,000원	
2)공장등록 증명	1건	1,000원	
3)시설 보유 증명	1통	2,600원	
4)(식품환경)영업허가, 휴폐업 사실증명	1통	2,200원	
5)의료기관, 약국 (휴·폐업) 사실증명	1통	2,000원	
다.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관한 증명 및 열람			
1)공부의 등·초본 교부 대장문서			지적관계 제외
가) 토지도면	1통	500원	
나) 건물도면	1통	500원	

개 정 안

1. 증명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가. 신상에 관한 증명			
1)부양가족사실확인원	1건	1,000원	
2)국제결혼증명	1건	3,000원	
나.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각종신고 및 등록필	1통	1,000원	
2)공장등록 증명	1건	1,000원	
3)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원	
4)시설 보유 증명	1통	2,600원	
5)(식품환경)영업허가, 휴폐업 사실증명	1통	2,200원	
6)의료기관, 약국 (휴·폐업) 사실증명	1통	2,000원	
다.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관한 증명 및 열람			
1)공부의 등·초본 교부 대장문서			지적관계 제외
가) 토지도면	1통	500원	
나) 건물도면	1통	5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2)공부열람			
가) 기본료	시간당	400원	
나) 초과료	10분당	100원	
3)인·허가·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	1건	400원	
4)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당	800원	
5)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주택수당	800원	
라.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교부	1필지	1,000원	
2)환지 예정지 분할	1필지	1,200원	
3)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1필지	1,200원	
4)표준설계 도서	1건	7,000원	
5)체비지 분할 신청	1필지	1,200원	
6)토지대금 완납 증명	1건	1,200원	
마. 지방세에 관한 증명			
1)세목별 과세증명	1통	800원	
전자민원(인터넷)신청 시	1통	무료	
바. 회계에 관한 증명			
1)실적(납품,용역,거래,공사)증명	1통	1,400원	
2)원천징수 공제 증명	1통	1,4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2)공부열람			
가) 기본료	시간당	400원	
나) 초과료	10분당	100원	
3)인·허가·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	1건	400원	
4)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당	800원	
5)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주택수당	800원	
라.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교부	1필지	1,000원	
2)환지 예정지 분할	1필지	1,200원	
3)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1필지	1,200원	
4)표준설계 도서	1건	7,000원	
5)체비지 분할 신청	1필지	1,200원	
6)토지대금 완납 증명	1건	1,200원	
마. 지방세에 관한 증명			
1)세목별 과세증명	1통	800원	
전자민원(인터넷)신청 시	1통	무료	
바. 회계에 관한 증명			
1)실적(납품,용역,거래,공사)증명	1통	1,400원	
2)원천징수 공제 증명	1통	1,4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사. 주택에 관한 증명			
1)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	1통	600원	
아. 개인정보화일열람			
1)화일열람	1건	200원	
2)정정청구	1건	200원	
자. 기타 제증명			
1)기타 시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건	1,2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사. 주택에 관한 증명			
1)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	1통	600원	
아. 개인정보화일열람			
1)화일열람	1건	200원	
2)정정청구	1건	200원	
자. 기타 제증명			
1)기타 시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건	1,200원	

2.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가. 일반행정관계			
1)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건	신규5,000원 갱신 또는 기간연장 3,000원	
2)농지등급 설정 심사 청구 신청	1건	5,000원	
3)기타 각종 안허가 신고 필증등 재교부 신청	1건	1,500원	

2.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가. 일반행정관계			
삭제			
1)농지등급 설정 심사 청구 신청	1건	5,000원	
2)기타 각종 안허가 신고 필증등 재교부 신청	1건	1,500원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4)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원	
5)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법인)	1건	30,000원	
6)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공인중개사)	1건	20,000원	
7)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원	
8)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 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재교부신청	1건	800원	
나. 농. 수산부 관계			
1)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건	400원	
2)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6,500원	
3)내수면어업허가 신청	1건	5,000원	
4)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5)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3)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원	
4)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법인)	1건	30,000원	
5)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 등록신청(공인중개사)	1건	20,000원	
6)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원	
7)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 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신청	1건	800원	
나. 농. 수산부 관계			
1)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건	400원	
2)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6,500원	
3)내수면어업허가 신청	1건	5,000원	
4)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1건	7,500원	
5)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	1건	9,000원	
6)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원	
7)내수면어업 면허연장 허가신청	1건	5,000원	
8)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1건	2,000원	
9)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1건	1,000원	
10)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3,000원	
11)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1건	9,000원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다.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1건	3,000원	
2)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신청	1건	100,000원	
3)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	1건	20,000원	
4)석유판매업(용제판매업) 등록신청	1건	10,000원	
5)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신고	1건	15,000원	
6)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7)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록	1건	15,000원	
8)공장등록대장등본 발급신청	1건	1,000원	
라. 도시, 건설 관계			
1)사도 개설허가 및 축조 변경 허가 신청	1건	7,000원	
2)공영주택의 양수, 양도 등 승인신청	1건	3,500원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12)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13)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다.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1건	3,000원	
2)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신청	1건	100,000원	
3)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	1건	20,000원	
4)석유판매업(용제판매업) 등록신청	1건	10,000원	
5)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	1건	10,000원	
6)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7)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록	1건	10,000원	
8)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원	
9)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10)공장등록대장등본 발급신청	1건	1,000원	
라. 도시, 건설 관계			
1)사도 개설허가 및 축조 변경 허가 신청	1건	7,000원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3)공(사)영 주택 증개축 승인신청	1건	3,000원	
4)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필지	5,500원	
5)체비지 명의변경신청	1필지	2,600원	
6)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필지	2,700원	
7)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 신청	1필지	2,200원	
마. 보건사회관계			
1)의료기관(부속 의료기관 포함) 개설 허가 및 신고(변경 포함)			
가)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원	
나)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장소 이전만 해당)	1건	40,000원	
다)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원	
라)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장소 이전만 해당)	1건	20,000원	
2)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재교부	1건	2,000원	
3)의료법인 부대사업 개설신고	1건	10,000원	
4)안마시술소 개설신고	1건	30,000원	
5)안마시술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장소 이전만 해당)	1건	20,000원	
6)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7)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원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2)공영주택의 양수, 양도 등 승인신청	1건	3,500원	
3)공(사)영 주택 증개축 승인신청	1건	3,000원	
4)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필지	5,500원	
5)체비지 명의변경신청	1필지	2,600원	
6)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필지	2,700원	
7)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 신청	1필지	2,200원	
마. 보건사회관계			
1)의료기관(부속 의료기관 포함) 개설 허가 및 신고(변경 포함)			
가)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원	
나)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장소 이전만 해당)	1건	40,000원	
다)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원	
라)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장소 이전만 해당)	1건	20,000원	
2)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재교부	1건	2,000원	
3)의료법인 부대사업 개설신고	1건	10,000원	
4)안마시술소 개설신고	1건	30,000원	
5)안마시술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장소 이전만 해당)	1건	20,000원	
6)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8)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원	
9)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원	
10)종합유원시설업 허가	1건	60,000 원	
11)일반유원시설업 허가	1건	50,000 원	
12)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고)	1건	30,000 원	
13)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고)	1건	15,000 원	
14)기타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 원	
15)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1건	15,000 원	
16)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신고	1건	10,000 원	
바. 문화공보 관계			
1)공연장업 등록	1건	10,000 원	
2)공연장업 변경등록	1건	5,000 원	
3)게임물 관련사업자 신규 허가·등록·신고	1건	20,000 원	
4)게임물 관련사업자 허가· 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	1건	5,000 원	
5)음악산업 관련사업자 신규 등록신고	1건	20,000 원	
6)음악산업 관련사업자 등록 신고사항 변경 신청	1건	10,000 원	
7)비디오물 영업자 신규등록신고	1건	20,000 원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7)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원	
8)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9)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원	
10)종합유원시설업 허가	1건	60,000원	
11)일반유원시설업 허가	1건	50,000원	
12)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고)	1건	30,000원	
13)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고)	1건	15,000원	
14)기타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15)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1건	15,000원	
16)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신고	1건	10,000원	
바. 문화공보 관계			
1)공연장업 등록	1건	10,000원	
2)공연장업 변경등록	1건	5,000원	
3)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4)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5)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6)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8)비디오물 영업자 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	1건	5,000원	
9)영화업 신고	1건	20,000원	
10)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11)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원	
12)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원	
13)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원	
사. 도로교통관계			
1)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원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7)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8)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9)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등록)증 재교부	1건	4,000원	
10)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11)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12)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13)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4)게임제작업·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15)일반·청소년게임제공업 허가(등록) 신청	1건	20,000원	
16)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 신청	1건	20,000원	
17)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등록신청)	1건	20,000원	
18)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일반 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	1건	5,000원	
19)영화업 신고	1건	20,000원	
20)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1)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원	
22)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원	
23)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원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2)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 변경)신고	1건	1,500원	
3)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1건	1,500원	
4)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 허가신청	1건	1,500원	
5)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건	1,500원	
6)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발급	1건	1,500원	
아. 체육시설관계			
1)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원	
2)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원	
3)체육시설업 등록신청	1건	50,000원	
4)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	1건	20,000원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사. 도로교통관계			
1)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원	
2)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 (신규, 변경)신고	1건	1,500원	
3)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1건	1,500원	
4)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 허가신청	1건	1,500원	
5)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건	1,500원	
6)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발급	1건	1,500원	
아. 체육시설관계			
1)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원	
2)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원	
3)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1건	50,000원	
4)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신청	1건	20,000원	
자. 에너지관계			
1)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신청	1건	50,000원	
2)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	1건	20,000원	
3)승강기유지관리업등록증 재발급	1건	4,000원	
4)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등록신청	1건	50,000원	
5)전력시설물설계업(전문1종) 등록신청	1건	30,000원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6)전력시설물설계업(전문2종) 등록신청	1건	20,000원	
7)전력시설물감리업(종합감리업) 등록신청	1건	50,000원	
8)전력시설물감리업(전문감리업) 등록신청	1건	30,000원	
9)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1건	5,000원	
10)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증 재교부	1건	5,000원	
11)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양도·양수 신고	1건	45,000원	
12)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양도·양수 신고	1건	25,000원	
13)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양도·양수 신고	1건	15,000원	
14)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양도·양수 신고	1건	45,000원	
15)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양도·양수 신고	1건	25,000원	
16)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법인합병 신고	1건	45,000원	
17)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법인합병 신고	1건	25,000원	
18)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법인합병 신고	1건	15,000원	
19)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1건	45,000원	
20)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1건	25,000원	

.행정정보공개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 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 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 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 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건(10컷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행정정보공개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 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 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 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 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건(10컷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붙임 1 관계법령발췌서

□ 법령명

□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4., 2021. 12. 16.>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 12. 16.>

[전문개정 2012. 9. 2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 5. 28.]

붙임 3 **현행조례**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1. 증명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가. 신상에 관한 증명			
1)부양가족사실확인원	1건	1,000원	
2)국제결혼증명	1건	3,000원	
나.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각종신고 및 등록필	1통	1,000원	
2)공장등록 증명	1건	1,000원	
3)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원	
4)시설 보유 증명	1통	2,600원	
5)(식품환경)영업허가, 휴폐업 사실증명	1통	2,200원	
6)의료기관, 약국 (휴·폐업) 사실증명	1통	2,000원	
다.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관한 증명 및 열람			
1)공부의 등·초본 교부 장문서			지적관계 제외
가) 토지도면	1통	500원	
나) 건물도면	1통	500원	
2)공부열람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가) 기본료	시간당	400원	
나) 초과료	10분당	100원	
3)인·허가·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	1건	400원	
4)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당	800원	
5)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주택1부당	800원	
라.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교부	1필지	1,000원	
2)환지 예정지 분할	1필지	1,200원	
3)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1필지	1,200원	
4)표준설계 도서	1건	7,000원	
5)체비지 분할 신청	1필지	1,200원	
6)토지대금 완납 증명	1건	1,200원	
마. 지방세에 관한 증명			
1)세목별 과세증명	1통	800원	
전자민원(인터넷)신청 시	1통	무료	
바. 회계에 관한 증명			
1)실적(납품,용역,거래,공사)증명	1통	1,400원	
2)원천징수 공제 증명	1통	1,400원	
사. 주택에 관한 증명			
1)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	1통	600원	
아. 개인정보화일열람			
1)화일열람	1건	2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정정청구	1건	200원	
자. 기타 제증명			
1)기타 시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건	1,200원	

2.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가. 일반행정관계			
1)농지등급 설정 심사 청구 신청	1건	5,000원	
2)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1건	1,500원	
3)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원	
4)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 등록신청(법인)	1건	30,000원	
5)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 등록신청(공인중개사)	1건	20,000원	
6)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원	
7)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재교부 신청	1건	800원	
나. 농. 수산부 관계			
1)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건	4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6,500원	
3)내수면어업허가 신청	1건	5,000원	
4)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1건	7,500원	
5)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	1건	9,000원	
6)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원	
7)내수면어업 면허연장 허가신청	1건	5,000원	
8)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1건	2,000원	
9)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1건	1,000원	
10)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3,000원	
11)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1건	9,000원	
12)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13)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다.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1건	3,000원	
2)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신청	1건	100,000원	
3)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	1건	20,000원	
4)석유판매업(용제판매업) 등록신청	1건	10,000원	
5)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	1건	10,000원	
6)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7)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록	1건	10,000원	
8)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원	
9)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10)공장등록대장등본 발급신청	1건	1,000원	
라. 도시, 건설 관계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사도 개설허가 및 축조 변경 허가 신청	1건	7,000원	
2)공영주택의 양수, 양도 등 승인신청	1건	3,500원	
3)공(시)영 주택 증개축 승인신청	1건	3,000원	
4)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필지	5,500원	
5)체비지 명의변경신청	1필지	2,600원	
6)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필지	2,700원	
7)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 신청	1필지	2,200원	
마. 보건사회관계			
1)의료기관(부속 의료기관 포함) 개설 허가 및 신고(변경 포함)			
가)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원	
나)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장소 이전만 해당)	1건	40,000원	
다)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원	
라)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장소 이전만 해당)	1건	20,000원	
2)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재교부	1건	2,000원	
3)의료법인 부대사업 개설신고	1건	10,000원	
4)안마시술소 개설신고	1건	30,000원	
5)안마시술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장소 이전만 해당)	1건	20,000원	
6)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7)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원	
8)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9)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원	
10)종합유원시설업 허가	1건	60,000원	
11)일반유원시설업 허가	1건	50,000원	
12)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고)	1건	3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3)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고)	1건	15,000원	
14)기타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15)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1건	15,000원	
16)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원	
바. 문화공보 관계			
1)공연장업 등록	1건	10,000원	
2)공연장업 변경등록	1건	5,000원	
3)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4)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5)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6)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7)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8)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9)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등록)증 재교부	1건	4,000원	
10)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11)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12)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13)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4)게임제작업·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15)일반·청소년게임제공업 허가(등록) 신청	1건	20,000원	
16)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17)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등록신청)	1건	2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8)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일반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	1건	5,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9)영화업 신고	1건	20,000원	
20)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1)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원	
22)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원	
23)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원	
사. 도로교통관계			
1)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원	
2)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 (신규, 변경)신고	1건	1,500원	
3)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1건	1,500원	
4)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 허가신청	1건	1,500원	
5)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건	1,500원	
6)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발급	1건	1,500원	
아. 체육시설관계			
1)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원	
2)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원	
3)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1건	5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4)체육시설업(골프장업및 스키장업) 변경등록신청	1건	20,000원	
자. 에너지관계			
1)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1건	50,000원	
2)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원	
3)승강기유지관리업등록증 재발급	1건	4,000원	
4)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등록신청	1건	50,000원	
5)전력시설물설계업(전문1종) 등록신청	1건	30,000원	
6)전력시설물설계업(전문2종) 등록신청	1건	20,000원	
7)전력시설물감리업(종합감리업) 등록신청	1건	50,000원	
8)전력시설물감리업(전문감리업) 등록신청	1건	30,000원	
9)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1건	5,000원	
10)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 시설물 감리업 등록증 재교부	1건	5,000원	
11)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양도·양수 신고	1건	45,000원	
12)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양도·양수 신고	1건	25,000원	
13)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양도·양수 신고	1건	15,000원	
14)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양도·양수 신고	1건	45,000원	
15)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양도·양수 신고	1건	25,000원	
16)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법인합병 신고	1건	45,000원	
17)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법인합병 신고	1건	25,000원	
18)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법인합병 신고	1건	15,000원	
19)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1건	45,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0)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1건	25,000원	

3.행정정보공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3년도 수시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업을 추가 반영한 2023년도 수시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생연 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변경 건(투자개발과) : 취득

구분	(당초)	(변경)
	2023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수시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합계(면적/금액)	42,262.45㎡ / 65,561.3백만 원	44,577.45㎡(증 2,315) / 73,361.3백만 원(증 7,800)
생연 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변경 건 (투자개발과)	[취득] 2020년 수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 취득 : 1,600.88㎡(1,975백만 원) · 처분 : 566.88㎡(695백만 원)	[취득] : 건물(신규 추가) · 취득면적 : 2,315㎡ · 기준금액 : 7,800백만 원

※ 당초 계획(2020년 수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기준금액 30% 이상 증가하여 변경계획 수립

2023년도 관리계획서(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 원)

구 분			당초(취득·처분)			변경(취득·처분)			증감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7**	**28,763.65**	**18,792.3**	**7**	**28,763.65**	**18,792.3**				
		건물	**7**	**16,625.72**	**49,392**	**8**	**18,940.72**	**57,192**	**1**	**2,315**	**7,800**	**신축**
		기타										
	1.매 입	토지	7	28,763.65	18,792.3	7	28,763.65	18,792.3				
		건물	2	2,921.72	2,018	2	2,921.72	2,018				
		기타										
	2.교 환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기 타 취 득	토지										
		건물	5	13,704	47,374	6	16,019	55,174	1	2,315	7,800	신축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2**	**3,126.92**	**2,623**	**2**	**3,126.92**	**2,623**				
		기타										
	4.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교 환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7.기 타 처 분	토지										
		건물	2	3,126.92	2,623	2	3,126.92	2,623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 원)

번호	구분	당초(2020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증감		비고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	취득방법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	취득방법	면적	기준가격	
계	토지	12필지	1,034	1,280	협의취득	12필지	1,034	1,280	협의취득	-	-	-
	건물	8동	566.88	695	협의취득	9동	2,881.88	8,495	신축	2,315	7,800	신축
1	건물	-	-	-	-	생연동 825-15	2,315	7,800	신축	2,315	7,800	신축
2	토지	생연동 825-15	169	240	협의취득(수용재결)	〃	〃	〃	협의취득(수용재결)	-	-	취득완료
3	토지	생연동 825-159	86	80		〃	〃	〃		-	-	
4	토지	생연동 825-130	43	50		〃	〃	〃		-	-	
5	토지	생연동 825-131	69	65		〃	〃	〃		-	-	
6	토지	생연동 825-134	119	174		〃	〃	〃		-	-	
7	토지	생연동 825-45	79	125		〃	〃	〃		-	-	
8	토지	생연동 825-43	150	145		〃	〃	〃		-	-	
9	토지	생연동 825-42	56	77		〃	〃	〃		-	-	
10	토지	생연동 825-127	122	157		〃	〃	〃		-	-	
11	토지	생연동 825-155	56	77		〃	〃	〃		-	-	
12	토지	생연동 825-156	73	80		〃	〃	〃		-	-	
13	토지	생연동 825-186	12	10		〃	〃	〃		-	-	
14	건물	생연동 825-15	167	210		〃	〃	〃		-	-	
15	건물	생연동 825-131	25.79	30		〃	〃	〃		-	-	
16	건물	생연동 825-45	110.72	120		〃	〃	〃		-	-	
17	건물	생연동 825-43	110.36	145		〃	〃	〃		-	-	
18	건물	생연동 825-42	70	90		〃	〃	〃		-	-	
19	건물	생연동 825-127	48.49	50		〃	〃	〃		-	-	
20	건물	생연동 825-155	7.21	15		〃	〃	〃		-	-	
21	건물	생연동 825-156	27.31	35		〃	〃	〃		-	-	

처분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 원)

번호	재 산 표 시			기준 가격	처분시기	처분사유	소관 부서	비고
	구분	소재지	면적					
계			해	당	없	음		
			해	당	없	음		

□ 생연 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변경 건 : 투자개발과

가. 사업개요

○ 소 재 지 : 동두천시 생연동 825-15번지 외 11필지

○ 사업기간 : 2022. 3. ~ 2024. 12.

○ 소요예산

· 총사업비 : 10,000백만 원

· 재원조달 : 국비(8,000)+지방비(2,000)

○ 사업규모 : 건물 1동 2,315㎡(5층) 취득 ※토지 12필지 1,028㎡(취득 완료)

○ 기준가격명세 : 건물 취득 7,800백만 원

○ 계약방법 : 토지 취득(수용에 따른 협의취득) 및 건물 신축

○ 변경사유 : 토지 매입 완료 후, 건물 신축

나.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및 삶의 질 개선 목적

○ 사업용도

· 지역 주민원도심 지역의 주민 편익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문화복지시설 제공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유형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다. 추진경위

○ 2020. 8. : 2020년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

○ 2021. 7. :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 공모 선정

○ 2022. 3. : 공공건축심의 완료

❍ 2022. 8.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3. 6. : 공사 착공

라. 추진계획

❍ 2024. 12. : 공사 준공

마.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도

현황사진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의 일부를 개정하여 산업특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본 규약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정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운영협의회 위원 변경 : 시장 → 부시장 (안 제5조)

나. 운영협의회 직무 대리자 변경 : 부시장 → 국장 (안 제6조)

다. 실무협의회 위원 변경 : 국장 → 과장(안 제11조)

라. 실무협의회 대리 참석 규정 신설 (안 제11조)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를 “제16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위원은 동두천시장, 양주시장, 포천시장”을 “위원은 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 부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양주시장, 포천시장, 동두천시장”을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시장”을 “섬유산업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섬유산업담당국장과 안건 관련 국장을”을 “경기도 섬유산업 담당과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섬유산업 담당과장과 안건 관련 과장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섬유산업담당국장이 실무협의회”를 “섬유산업 담당과장이 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직무위임자가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본 규약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구 운영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제16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 ---------- ---------- ---------- ---------- ----------.
제2조(구성)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이하“특구”라 한다) 운영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한다. 1. (생 략) 2.·3. (생 략)	제2조(구성) ---------- ---------- ---------- ---------- ---------- ----------. 3. (현행 제1호와 같음) 1.·2.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5조(조직) ① (생 략)	제5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 위원은 동두천시장, 양주시장, 포천시장이 되며, 이 중에 회장을 선출한다.	② ---- 위원은 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 부시장----------.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회장) ① 본 협의회의 회장은 양주시장, 포천시장, 동두천시장 순의 윤번제로 한다.	제6조(회장) ① ----------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 단체의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 섬유산업 담당국장-----.
제11조(실무협의회) ① (생 략)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섬유산업담당국장과 안건 관련 국장을 위원으로 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 경기도 섬유산업 담당과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섬유산업 담당과장과 안건 관련 과장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섬유산업담당국장이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된다. <신 설>	④ ----------섬유산업 담당과장이 협의회 ----------. ⑤ 실무협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직무위임자가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붙임 1 **현행규약**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운영 협의회 규약

제1조(목적) 본 규약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구 운영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이하"특구"라 한다) 운영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한다.

1. 동두천시
2. 양주시
3. 포천시

제3조(처리사무) 협의회는 구성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특구 발전 및 시행
2. 지방자치단체별 섬유분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3. 그밖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사업추진) ① 협의회의 사업은 3개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② 협의회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된 해당 사무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수탁하는 기관에 위탁하고, 행정적 지원과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동두천시장, 양주시장, 포천시장이 되며, 이 중에 회장을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괄 간사 1명을 둔다.

④ 간사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섬유산업담당과장이 되며, 회의 운영의 기록 관리 등 협의회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회장) ① 본 협의회의 회장은 양주시장, 포천시장, 동두천시장 순의 윤번제로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 단체의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특별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특별위원을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은 경기도, 경기섬유산업연합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 및 해당분야 관계 기관 전문가 중에

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② 특별위원은 제11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8조(사무소의 소재지 등) ① 협의회 사무소는 센터에 둔다.

②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의결 사항 등 각종 자료는 협의회 사무소에서 관리한다.

제9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개최시기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하며, 협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참석대상으로 한다.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위원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후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회의 개최 결과를 관계 위원과 각 시장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방법) 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개최를 요구한 위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안건 의결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하며, 위원의 위임을 받아 참석한 대리인에게 토의·표결 권한을 부여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섬유산업담당국장과 안건 관련 국장을 위원으로 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안건 중 중대하지 않은 사안은 실무협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④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섬유산업담당국장이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된다.

제12조(경비부담 및 집행)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특구 운영 공동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② 특구 운영 협의회 경비 집행 및 결산 등에 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제13조(사무 인계) 회장은 임기만료일 후 1개월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다음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4조(규약의 개정 및 폐지)

① 규약의 개정 및 폐지는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의결한다.

② 협의회에서 의결된 규약의 개정·폐지안은 각 위원 시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조(보칙)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기준 등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설치·관리자의 책무에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추가(안 제4조)

나.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추가(안 제5조의2)

-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공중화장실 중 국가나 동두천시가 설치한 화장실(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은 제외한다)
- 경찰 등 관련기관 사전 협의 후 범죄 취약·우려 지역에 소재한 공중화장실

동두천시 조례 제 호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4조 중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고”를 “편의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공중화장실 중 국가나 동두천시가 설치한 화장실(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은 제외한다)

2. 경찰 등 관련기관 사전 협의 후 범죄 취약·우려 지역에 소재한 공

중화장실

3. 기타(시장이 필요성을 판단하여 지정한 공중 및 개방화장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함 ----------.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고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 편의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제5조(설치기준) ① ----------. 1. ~ 5. (현행과 같음)

6.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6. ----------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공중화장실 중 국가나 동두천시가 설치한 화장실(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은 제외한다) 2. 경찰 등 관련기관 사전 협의 후 범죄 취약·우려 지역에 소재한 공중화장실 3. 기타(시장이 필요성을 판단하여 지정한 공중 및 개방화장실)

붙임 1 관계법령발췌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중화장실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

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2 **현행조례**

□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환경보호과), 031-860-225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7. 9.25.>

제3조(적용범위) ① 삭제 <2017. 9.25.>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8 제1호 가목의 시설을 갖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9.25.>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5.>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25.>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의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7. 9.25.>

6.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7. 9.25.>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9.25.>

제7조(관리인의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5.>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9.25.>

제8조(편의용품)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갖추고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을 갖추기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9.25.>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목개정 2018. 8. 13.]

제9조(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5.>

1. 1일 3회 이상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실의 이용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 9.25.>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5.>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8.8.13.>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개최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

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추고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7. 9.25.>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8.13.>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17. 9.25.>

제6장 과태료 부과

제18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8.13.>

제19조

<2017. 9.25.>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동두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안 제1조～제3조)

나.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와 권리,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제7조)

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안 제8조～제10조)

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안 제11조～제18조)

마.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안 제19조～제26조)

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안 제27조～제33조)

동두천시 조례 제 호

동두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여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단체, 기업 및 경제단체와 협력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와 권리) ①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기후위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으며 시에게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도록 촉구할 권리를 지닌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제8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장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동두천시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동두천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동두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동두천시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시 감축목표와 부문별·연도별 목표 및 이행 대책

3.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시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40조에 따라 동두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1조(동두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 소속으로 동두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시장이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

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제19조(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21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시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

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시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25조(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지역 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

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27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천연대가 법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

하여야 한다.

제29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제31조(탄소중립 지원센터 대상기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시설과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2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담당하는 국의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33조(포상 등) 시장은 탄소중립 촉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두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동두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제4조(적용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를 최초로 수립할 때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한다.

붙임 1 관계법령발췌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약칭:탄소중립기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4조(법령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거나, 국가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거나,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와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관계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 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토 대상, 방법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3항(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0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변경,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3. 지방자치단체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2 **참고자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참고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시·군·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

·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군·구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3조(시·군·구의 책무) ① 시·군·구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군·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시·군·구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군·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군·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군·구민의 책무) ①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군·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군·구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1]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군·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시·군·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1) 조례 입안시 2050년 또는 이전 연도를 탄소중립 목표연도로 설정 가능함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9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군·구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시·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자체 결정)[2]과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2) 지자체 판단하에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급으로 지정하여 입안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군・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16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사무국)[3]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제1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제19조(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교통·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3) 위원회의 사무국을 두려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사무국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때는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제21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시·군·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시·군·구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25조(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군·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지역 물관리 사업)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군·구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27조(협동조합의 활성화)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절차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제28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천연대가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군·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30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지정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32조(탄소중립 지원센터 대상기관)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기관·단체)[4]를 말한다.

제33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군·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시·군·구 저탄소 녹색성장 성장 기본 조례」[5]에 따라 수립

4) 시·도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나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추가 근거가 필요한 경우에 활용(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 :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

5) 지자체 현황에 따라 해당하는 조례명을 삽입 가능

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제4조(적용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를 최초로 수립할 때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한다.[6)]

6) 지역 상황에 따라 목표연도와 기준연도는 변경가능하나, 가능하면 국가목표와의 정합성 고려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부족과 충전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

○ 위 치 : 동두천시 소유 주차장(시청사 등 16개소)

○ 설치규모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37기(급속 18기, 완속 19기)

나. 운영방법

○ 설치 및 운영 : 대영채비(주) (민간사업자)

○ 운영기간 : 공유재산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5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 운영범위 :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 제공,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 **예산수반 사항 : 없음**(사업비 민간사업자 전액 부담)

□ **동의내용 및 대상**

○ 동의내용 :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 동의대상 : 동두천시 공유재산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37기)

□ **향후계획**

○ 공유재산 사용허가 : 2023. 11.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 2023. 11.～12.

붙임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 현황 1부.

2. 관련법령 발췌서 1부.

붙임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 현황

연번	시 설 명	소재지	300kW	100kW		50kW	7kW	비고
				2ch	1ch			
1	**시청사**	생연동 438	1		1			의무
2	**시청사 부설주차장**	생연동 428		3			4	
3	소요 별앤숲 테마파크 2주차장	상봉암동 산21-3		1				
4	**소요산 주차장**	상봉암동 산1-1		2			4	
5	**소요산 관광지 2주차장**	상봉암동 164-4					4	
6	**대형자동차 주차장**	상패동 370			1		2	
7	**동두천자연휴양림**	탑동동 92				1	3	
8	**동두천놀자숲**	탑동동 37					2	
9	**환경사업소 관리동 앞**	상봉암동 173		1				비의무
10	**한미우호의 광장주차장**	보산동 431-36		1				
11	**동두천 반다비체육센터**	상패동 55		1				
12	**택시쉼터주차장**	상패동 370		1				
13	**5060 주차장**	생연동 824-8			1			
14	**중앙동 주차장**	생연동 612-1			1			
15	**불현동 행정복지센터**	생연동 395			1			
16	**동두천시 보건소**	생연동 714-9			1			
합계 (37기)			1	10	6	1	19	

※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충전 편의성 제고를 위해 법적 비의무 대상시설 8개소(급속 충전시설 8기) 포함

붙임 2 관련법령 발췌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동두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재정지원)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개인택시 융자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근거조항 마련

○ (차령조정)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의 조례로 택시 기본차령을 2년 이내에서 더할 수 있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 (차령조정) 차령 제한에 대해 자동차 제작기술 발전 및 도로여건 개선 등 현실 반영 필요성 대두

□ 주요내용

가. (재정지원) 개인택시 양수 시 특례보증 출연금 및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사업 지원 가능 명시적 표기(안 제7조)

나. (차령조정) 현재 택시 기본차령인 개인택시 5년~9년, 일반택시 3년 6개월~6년을 2년씩 연장(안 제11조 및 별표)

동두천시 조례 제 호

동두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면허 양수 특례보증 출연금 및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사업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령의 연장 중에 있는 차량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제2호 차령연장 요건에 적합하여 차령의 연장 중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조례 제11조에 따른 차령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제11조 관련)

차 종	사 업 의 구 분		차 령
승 용 자 동 차	여 객 자 동 차 운 송 사 업 용	개인택시(경형·소형)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9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11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11년
		일반택시(경형·소형)	5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6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8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8년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구분	사업의 구분		대상
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 운송사업	개인택시(경형·소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하 "차령기산일"이라 한다)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 운송사업	일반택시(경형·소형)	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재정지원사업) 시장은 택시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사업) ---------- ---------- ---------- ----------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면허 양수 특례보증 출연금 및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사업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신 설>	제11조(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제12조 (생 략)	제12조·제13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신 설>	[별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제11조 관련)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9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11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11년
		일반택시(경형·소형)	5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6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8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8년

현 행	개 정 안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구분	사업의 구분		대상
택시 운송 사업	개인 택시 운송 사업	개인택시 (경형·소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하 "차령기산일"이라 한다)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 (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 (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 (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 택시 운송 사업	일반택시 (경형·소형)	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 (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 (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 (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붙임 1 관계법령발췌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3. 21.>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1. 차령

차 종	사 업 의 구 분		차 령
승용자동차	여 객 자 동 차 운 송 사 업 용	개인택시(경형 · 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9년
		일반택시(경형 · 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자 동 차 대 여 사 업 용	경형 · 소형 · 중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6년
		대형	10년
	플랫폼운송사업용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승합자동차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1년
	그 밖의 사업용		9년
특수자동차	자 동 차 대 여 사 업 용	캠핑용자동차	9년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차종	사업의 구분		대상
승용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하 "차령기산일"이라 한다)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경형·소형)	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승합 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외의 사업용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이 목에서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의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시·도의 경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가목 및 나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지거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라.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동안에는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적용한다.

2. 차령 연장요건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에 받아야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모두 받았을 것

나.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붙임 2 **현행조례**

동두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정) 2020.06.01 조례 제214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과 동두천시 택시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란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이 경우 한정면허 택시를 포함한다)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 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택시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수급 지원,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수종사

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수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사업)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지하철·버스·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3.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4. 택시호출시스템 및 운영비,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통신료 지원 사업
5. 택시쉼터 설치 등 지원 사업

6. 법 제26조(최근 5년 이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최근 10년 이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택시운전자로서 택시업체와 택시관련 단체에서 추천받아 선정된 모범운전자에 대하여 근무복, 택시표시등 지원 사업

7. 출·퇴근길, 지역 문화·체육행사 등 교통봉사에 참여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 등 지원 사업

8. 택시 불법행위 합동 지도단속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은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일반택시운수종사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일정기간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1. 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교통사고자 및 유발자의 과실비율이 과반 이상자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임금 및 임금협상에서 처우개선 지원금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처우개선 지원금을 이미 받

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⑤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등)

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보조금 지원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및 처우개선지원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시장은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 또는 처우개선지원(이하 “재정지원 등”이라 한다)을 할 경우 사업별 재정지원 등 보조금의 사용 목적을 재정지원 등 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재정지원 등 대상자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재정지원 등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 등 보조금의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재정지원 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재정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적발 이후 같은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자료제출)

① 시장은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0.6.1. 조례 제21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3. 10 .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 2023.12.31. 만료됨에 따라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기관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나. 위탁기간 : 2024년 1월 ~ 2026년 12월

다.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라. 위탁사무

- 지역사회 진단 및 기획·자원 조정
- 중증정신질환 관리
- 자살예방사업
- 정신건강증진사업
-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 2023.12.31. 만료
◈ 「지역보건법」 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 및 동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위탁기간 선정을 동두천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 운영코자 함.

□ 위탁사무명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사무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 위탁)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설치·운영)

○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위탁기간)

□ 민간위탁 필요성

○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업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전문성 확보

□ 민간위탁 사무내용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 정신질환자 발견 · 등록 · 관리 및 전문 의료기관 의뢰 등 연계사업

○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 정신질환의 예방 · 상담 · 치료 및 재활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지원

○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자문

○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및 『자살예방사업 안내』지침에 따르며 동두천시 사업계획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위탁시설 개요

○ 일반현황

위탁사무	수탁기관	위탁기간 시작일 위탁기간 종료일	위탁방법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법인 가화의료재단	2021. 1. 1. 2023. 12. 31.	공개모집

<사업인력 현황>

(단위: 명/ 2023. 10. 기준)

구분 자격	계	센터장(비상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부센터장 전문요원	상임팀장 전문요원	팀장 전문요원	팀원 분야별	비고
인원수	27	1	1	1	3	21	휴직자포함

재산종류	소재지	면적(㎡)	용도	비고
건물	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 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355	사무실	

위 치 도

□ 민간위탁 기간

○ 위탁 운영기간 : 3년 (2024년 1월 ~ 2026년 12월)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연혁

○ 1998. 3.~ 2005. 12. 의료법인 가화재단 동원병원 수의계약 운영(7년 9월)

○ 2006. 1.~ 2008. 12. 의료법인 가화재단 동원병원 수의계약 운영(3년)

○ 2009. 1.~ 2011. 12.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운영(3년)

○ 2012. 1.~ 2014. 12. 의료법인 가화의료재단 동원병원 위탁운영(3년)

○ 2015. 1.~ 2017. 12. 학교법인 신흥학원 위탁운영(3년)

○ 2018. 1.~ 2020. 12. 학교법인 신흥학원 위탁운영(3년)

○ 2021. 1.~ 2023. 12. 의료법인 가화의료재단 위탁운영(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자격기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정신건강증진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 선정방법 : 동두천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동두천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안)

- 위원구성 : 9명 이내

위 원 장	부시장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건강증진과장
위촉직 위원	시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학교수 등

- 임　무 : 동두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심의

- 임　기 : 동두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심의 후 자동 해산

- 위　촉 : 위원회 구성과 동시 위촉되며, 위촉장 수여는 생략함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운영에 관한 내용은 별도 계획 수립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3년 위탁금 : 1,426,018천원

※ 국비 32%(456,326천원), 도비 11.6%(165,418천원), 시비 56.4%(804,274천원)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등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한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배치 등 전문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바 민간위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계획

○ 2023년 10월 : 의회동의

○ 2023년 11월 : 민간위탁 모집공고 및 접수

○ 2023년 11월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023년 12월 : 수탁운영자 선정결정 통보 및 협약서 체결

붙임 1 **관계법령발췌서**

지역보건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31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2019. 1. 15., 2019. 12. 3.>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 · 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 · 관리 · 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 · 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 · 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 · 구강건강 · 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 · 증진

라. 여성 · 노인 ·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 · 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제1항제5호아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13.] [법률 제19464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전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지원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지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고,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13.] [법률 제19464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4. 24.] [대통령령 제30142호, 2019. 10. 22., 일부개정]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 ·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 · 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 ·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 ·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2 **관련 자치법규**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7.11.22 조례 제1979호

(전부개정) 2020.03.01 조례 제2120호

제2조(설치 · 운영)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정) 2007.07.20 조례 제1374호

(일부개정) 2017.01.31 조례 제1917호 (인용조문과 용어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9.07.01 조례 제2073호

(일부개정) 2021.06.30 조례 제2196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21.07.29 조례 제2207호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22.05.10 조례 제2280호

제9조(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계약 적정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7.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31.,2019.7.1.>

③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중 1/2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신설 2019. 7.1.>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심의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종전 3항에서 이동 2019.7.1.>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 4항에서 이동 2019.7.1.>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9. 7. 1.>]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8.01.10 규칙 제 885호
(일부개정) 2012.12.31 규칙 제980호
(일부개정) 2015.05.02 규칙 제1034호 (타)
(일부개정) 2018.01.08 규칙 제1101호
(일부개정) 2018.08.13 규칙 제1116호

제7조(위탁기간)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황주룡 의원)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10.
발 의 자 :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 개정이유

○ 동두천시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에 대한 과도한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해소함으로써 건축 활성화를 이루고자 함

□ 주요내용

○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중 의료시설을 세분화하여 규정(안 제28조)

○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중 의료시설을 세분화하여 규정(안 제29조)

○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

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이격거리 규정(안 제32조)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건축법」 제58조, 제61조

○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2, 제86조

□ 참고사항 : 붙임

○ 「동두천시 건축 조례」제28조, 제29조, 제32조

○ 경기도 내 건축 조례 현황(대지 안의 공지 관련)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
<tr><th colspan="2">대상 건축물</th><th>띄어야 하는 거리</th><th>대상 건축선</th></tr>
<tr><td colspan="2">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수리점·게임제공업소·단란주점·노래연습장·가축시설(창고는 제외한다)·도축장·도계장·제2호의 건축물로써 500 제곱미터 이상</td><td>1M 이상</td><td rowspan="5">2개 이상의 도로가 접한 경우 주된 출입구가 있는 건축선</td></tr>
<tr><td colspan="2">위락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매매장은 제외한다)·자원순환관련시설</td><td>3M 이상</td></tr>
<tr><td rowspan="2">의료시설(종합병원은 제외)
다만, 병원은 바닥면적의 합계 1,500 제곱미터 이상</td><td>병원(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td><td>3M 이상</td></tr>
<tr><td>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td><td>6M 이상</td></tr>
<tr><td colspan="2">묘지관련시설과 장례식장</td><td>6M 이상</td></tr>
</table>

제29조제5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
<tr><th colspan="2">대상 건축물</th><th>띄어야 하는 거리</th></tr>
<tr><td colspan="2">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제조업소·수리점·게임제공업소·단란주점·노래연습장·가축시설(창고는 제외한다)·도축장·도계장·제2호의 건축물로써 100 제곱미터 이상. 다만, 상업지역은 제외한다.</td><td>1M 이상</td></tr>
<tr><td colspan="2">위락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매매장은 제외한다)·자원순환관련시설. 다만, 상업지역은 제외한다.</td><td>3M 이상</td></tr>
<tr><td rowspan="2">의료시설(종합병원은 제외)
다만, 병원은 바닥면적의 합계 1,500 제곱미터 이상이며,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td><td>병원(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td><td>1M 이상</td></tr>
<tr><td>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td><td>6M 이상</td></tr>
<tr><td colspan="2">묘지관련시설과 장례식장</td><td>6M 이상</td></tr>
<tr><td colspan="2">기타건축물</td><td>0.5M 이상</td></tr>
</table>

제32조제1항제2호 중 “9미터이하”를 “10미터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9미터”를 “10미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생연·송내택지개발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을 준용하고,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소음·진동 및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 중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자원순환관련시설·묘지관련시설·정신병원·정신요양시설·격리병원·장례식장 등으로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08.1.10>	제28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음·진동 및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은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한다.	4. ---------- ---------- ----------.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선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수리점·게임제공업소·단란주점·노래연습장·가축시설(창고는 제외한다)·도축장·도계장·제2호의 건축물로써 500 제곱미터 이상	1M 이상	2개 이상의 도로가 접한 경우 주된 출입구가 있는 건축선
위락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매매장은 제외한다)·자원순환관련시설	3M 이상	
묘지관련시설과 정신병원·정신요양시설·격리병원·장례식장	6M 이상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선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수리점·게임제공업소·단란주점·노래연습장·가축시설(창고는 제외한다)·도축장·도계장·제2호의 건축물로써 500 제곱미터 이상		1M 이상	2개 이상의 도로가 접한 경우 주된 출입구가 있는 건축선
위락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매매장은 제외한다)·자원순환관련시설		3M 이상	
의료시설(종합병원은 제외) 다만, 병원은 바닥면적의 합계 1,500 제곱미터 이상	병원(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3M 이상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6M 이상	
묘지관련시설과 장례식장		6M 이상	

第29조(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한다. 다만, 생연·송내택지개발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을 준용하고,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소음·진동 및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 중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자원순환관련시설·묘지관련시설·정신병원·정신요양시설·격리병원·장례식장 등으로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08.1.10>	第29조(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소음·진동 및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한다.	5. --.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제조업소·수리점·게임제공업소·단란주점·노래연습장·가축시설(창고는 제외한다)·도축장·도계장·제2호의 건축물로써 100 제곱미터 이상. 다만,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1M 이상
위락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매매장은 제외한다)·자원순환관련시설. 다만,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3M 이상
묘지관련시설과 정신병원·정신요양시설·격리병원·장례식장	**6M 이상**
기타건축물	0.5M 이상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제조업소·수리점·게임제공업소·단란주점·노래연습장·가축시설(창고는 제외한다)·도축장·도계장·제2호의 건축물로써 100 제곱미터 이상. 다만,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1M 이상
위락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매매장은 제외한다)·자원순환관련시설. 다만,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3M 이상
의료시설(종합병원은 제외) 다만, 병원은 바닥면적의 합계 1,500 제곱미터 이상이며,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병원(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1M 이상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6M 이상
묘지관련시설과 장례식장		6M 이상
기타건축물		0.5M 이상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 1. 삭 제 2. 높이 9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높이 2분의 1 이상 ② ~ ④ (생 략)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 2. --- 10미터이하---------- 3. --- 10미터---------- ② ~ ④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1. 2.>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	·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연립주택: 2미터 이상 5미터 이하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로 정하는 건축물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 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비고

1)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또는 2021년 11월 2일부터 2024년 11월 1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소 0.5미터 이상은 띄어야 한다.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붙임 2 **동두천시 건축 조례 제28조, 제29조**

□ 동두천시 건축 조례

제28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생연·송내택지개발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을 준용하고,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소음·진동 및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 중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자원순환관련시설·묘지관련시설·정신병원·정신요양시설·격리병원·장례식장 등으로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1.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및 창고 건축물은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 단지는 제외한다.

건축물 용도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선
	3천㎡ 미만	3천㎡ 이상	
공장 및 창고	3M 이상 (준공업지역: 1.5M 이상)	3.5M 이상 (준공업지역: 2M 이상)	2개 이상의 도로가 접한 경우 주된 출입구가 있는 건축선

2.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한다.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선
	3천㎡ 미만	3천㎡ 이상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3M 이상	3.5M 이상	2개 이상의 도로가 접한 경우 주된 출입구가 있는 건축선

3. 공동주택(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도로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6미터 이상 띄어 건축한다.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공동주택	·아파트 : 3M 이상 ·연립주택 : 2M 이상 ·다세대주택 : 1M 이상

4. 소음·진동 및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은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한다.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선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제조업소·수리점·게임제공업소·단란주점·노래연습장·가축시설(창고는 제외한다)·도축장·도계장·제2호의 건축물로써 500 제곱미터 이상	1M 이상	2개 이상의 도로가 접한 경우 주된 출입구가 있는 건축선
위락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매매장은 제외한다)·자원순환관련시설	3M 이상	
묘지관련시설과 정신병원·정신요양시설·격리병원·장례식장	6M 이상	

제29조(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한다. 다만, 생연·송내택지개발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을 준용하고,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소음·진동 및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 중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자원순환관련시설·묘지관련시설·정신병원·정신요양시설·격리병원·장례식장 등으로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1.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이상 공장 건축물은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공장	3천㎡ 미만	준공업지역 : 1.5M 이상(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M 이상)
	3천㎡ 이상	준공업지역 : 2M 이상(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5M 이상)

2.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건축물은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한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3천㎡ 미만	2M 이상
	3천㎡ 이상	3M 이상

3.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한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2층 이하로서 3세대 이하		1M 이상
		3층 4세대이상	개구부가 있는 곳	2M 이상
			개구부가 없는 곳	1M 이상
	다세대주택이 아닌 경우	연립주택		2M 이상
		아파트		4M 이상

4.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띄어 건축한다.

5. 소음·진동 및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한다.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제조업소·수리점·게임제공업소·단란주점·노래연습장·가축시설(창고는 제외한다)·도축장·도계장·제2호의 건축물로써 100 제곱미터 이상. 다만,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1M 이상
위락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매매장은 제외한다)·자원순환관련시설. 다만,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3M 이상
묘지관련시설과 정신병원·정신요양시설·격리병원·장례식장	6M 이상
기타건축물	0.5M 이상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영 86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

1. <삭제 2013.7.31.>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높이 2분의 1이상

붙임 3 **경기도 내 건축 조례 현황 (대지 안의 공지 관련)**

기준일 : 2023. 8. 8.

연번	지자체명	자치법규명	건축선으로부터 거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
1	경기도	경기도 건축 조례		
2	가평군	가평군 건축 조례	병원 3미터	병원 1.5미터
3	고양시	고양시 건축 조례	병원 3미터	병원 1.5미터
4	과천시	과천시 건축 조례	병원 3미터	병원 2미터
5	광명시	광명시 건축 조례	병원,장례 3미터	병원,장례 1.5미터
6	광주시	광주시 건축 조례	병원 3미터	병원 1.5미터
7	구리시	구리시 건축 조례	병원 3미터	병원 1.5미터
8	군포시	군포시 건축 조례	의료 3미터	의료 3미터
9	김포시	김포시 건축조례	병원 3미터	병원 3미터
10	남양주시	남양주시 건축 조례	병원 3미터	병원 1.5미터
11	부천시	부천시 건축 조례	병원 3미터	병원 2미터
12	성남시	성남시 건축 조례	병원 3미터	병원 1.5미터
13	수원시	수원시 건축 조례	병원 3미터	병원 3미터
14	시흥시	시흥시 건축 조례		
15	안산시	안산시 건축 조례		
16	안성시	안성시 건축 조례	의료 3미터	의료 1.5미터
17	안양시	안양시 건축 조례	병원 3(4)미터	병원 3미터
18	양주시	양주시 건축 조례	병원 3미터, 격리,장례 6미터, 묘지 2미터	병원 2미터, 격리,장례 3미터, 묘지 1.5미터
19	양평군	양평군 건축 조례	병원 3미터	병원 1.5미터
20	여주시	여주시 건축 조례		
21	연천군	연천군 건축조례	의료,장례 3미터	의료,장례 2미터
22	오산시	오산시 건축 조례	병원 3미터	병원 1.5(2;3)미터
23	용인시	용인시 건축 조례	병원 4미터, 소규모병원,장례 1.5미터	병원 3미터
24	의왕시	의왕시 건축 조례	의료 3미터	의료 3미터
25	의정부시	의정부시 건축 조례	병원,장례 3미터 묘지 2미터	병원,장례 3미터
26	이천시	이천시 건축 조례	의료 3미터	장례 1.5미터
27	파주시	파주시 건축 조례	병원 3미터	병원 1.5미터
28	평택시	평택시 건축 조례	병원 3미터	병원 1.5미터
29	포천시	포천시 건축 조례	의료,장례 3미터	정신,격리,장례 6미터
30	하남시	하남시 건축 조례	병원 3미터	병원 1.5미터
31	화성시	화성시 건축 조례	병원,묘지 3미터	병원,묘지 3미터

동두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김재수 의원)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10.
발 의 자 :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 제정이유

○ 극한호우 및 태풍 등 풍수해로 인한 주택이나 소상공인 건축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동두천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과 시민의 책무(안 제3조～제4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 지원사업(안 제7조)

○ 침수 방지시설 설치 권장 등(안 제9조)

○ 지원 신청(안 제10조)

○ 우선 지원(안 제11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

○ 「주택법」 제2조제1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

○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 참고사항 : 붙임

○ 경기도 내 침수 방지시설 설치 관련 조례 현황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풍수해로 인한 침수로부터 동두천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란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건축물에 물이 들어오거나 건축물이 물에 잠기는 등의 현상을 말한다.

3. “침수 방지시설”이란 빗물 등이 건축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물막이판, 역류방지밸브 등과 같은 시설을 말한다.

4.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5.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침수로부터 동

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침수 방지를 위한 시장의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침수 피해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 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100분의 80 이내 금액을 지

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의 우려가 큰 주택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4백만원 이내

2.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천만원 이내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 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침수 방지시설 설치 권장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신청) ①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사업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 및 해당 시설물의 주소 등

2.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시설의 소유자 동의서(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입주자대표회 동의서)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소요 경비 및 산출 근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우선 지원)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대상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근 또는 하천의 최고 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12조(시행규칙) 침수 방지시설의 구체적인 지원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재해지도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란 다음 각 호의 재해지도를 말한다.

1. 침수흔적도: 태풍, 호우(豪雨),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
2. 침수예상도: 현 지형을 기준으로 예상 강우 및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가. 홍수범람위험도: 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저류된 물을 배출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나. 해안침수예상도: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해안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

3. 재해정보지도: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 등을 바탕으로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의 정보를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가.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 피난에 관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도면

나.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침수예측정보, 침수사실정보 및 병원 위치 등 각종 방재정보가 수록된 생활지도

다.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재해유형별 주민 행동 요령 등을 수록하여 교육용으로 제작한 지도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물막이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

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물막이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호마목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구를 말한다.

가. 영 제8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나. 과거 5년 이내 1회 이상 침수가 되었던 지역 중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

다.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하천재해, 내수재해, 해안재해 위험지구와 관리지구로 선정된 지역 중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구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구

붙임 2 **경기도 내 침수 방지시설 설치 관련 조례 현황**

기준일 : 2023. 8. 31.

연번	지자체명	자치법규명	제정일자	지원 대상
1	경기도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4. 11.	
2	가평군			
3	고양시			
4	과천시	과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6. 23.	주택
5	광명시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2. 26.	건물
6	광주시	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5. 8.	주택
7	구리시	구리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6. 30.	주택, 소규모상가
8	군포시	군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7. 4.	주택,소상공인건축물
9	김포시	김포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7. 12.	주택,소규모상가
10	남양주시	남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5. 11.	주택
11	부천시	부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4. 17.	주택, 소규모상가
12	성남시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4. 3.	주택,소상공인상가
13	수원시	수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2. 30.	주택, 소규모상가
14	시흥시	시흥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6. 1.	주택, 소상공인건축물
15	안산시	안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7. 19.	주택, 소규모상가
16	안성시			
17	안양시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2. 30.	주택, 소규모상가
18	양주시	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2023. 7. 31.	주택
19	양평군			
20	여주시	여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6. 26.	주택
21	연천군			
22	오산시	오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5. 10.	주택
23	용인시			
24	의왕시	의왕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2. 30.	주택,소상공인건축물
25	의정부시	의정부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2. 19.	주택, 소규모상가
26	이천시	이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5. 12.	주택
27	파주시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7. 17.	주택,소상공인건축물
28	평택시			
29	포천시			
30	하남시	하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7. 13.	주택
31	화성시	화성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8. 4.	주택,소상공인건축물

동두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박인범 의원)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10.
발 의 자 :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 개정이유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예산의 지원에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비를 신설

(안 제5조제1항제5호)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

□ 참고사항 : 붙임

○ 경기도 및 경기도 내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①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비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③ 삭제 <2016. 5. 29.>

[전문개정 2008. 12. 31.]

붙임 2 **경기도 및 경기도 내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제5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비**
3. 주민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사업
4. 모범재향군인에 대한 포상 및 지원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홍보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9.4.29.]

□ 여주시 재향군인 예우과 지원 조례

제5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비**
3. 주민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사업
4. 모범재향군인에 대한 포상 및 지원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홍보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9.4.29.]

□ 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제6조(지원대상사업)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5.>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활동비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때에는 중복하여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

□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
3.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재향군인회 운영비 및 활동경비 <신설 2023.4.10>**
7.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3.4.10.>

□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2023년 8월 23일)

제5조제1항

5. 재향군인회 운영비

□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2023년 8월 11일)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비**
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2023년 6월 27일)

제6조

5. **재향군인회 운영비**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박인범 의원)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10.
발 의 자 :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 개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공헌을 알리고 예우하기 위하여 보훈명예상 규정

○ 보훈명예수당 및 독립유공자 수당의 지급 시기를 분기별에서 매월로 변경하여 지속성 있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상 규정 (안 제5조의 2)

○ 보훈명예수당 지급시기 변경(분기별→매월) (안 제11조)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국가보훈기본법

□ 참고사항 : 붙임

○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보훈명예상) ①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공헌을 알리고 예우하기 위하여 보훈명예상을 수여한다.

② 보훈명예상 수상 대상자는 보훈명예를 높이고 지역안보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 보훈단체 협의회에서 추천한 자 중 2명을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③ 수상 대상자에게는 보훈명예상 상패와 증서를 수여한다.

④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수여 하지 아니한다.

⑤ 보훈명예상은 매년 동두천시 보훈단체협의회 창립기념일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수상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견학, 주요 행사 초청,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⑦ 보훈명예상의 심사방법과 절차 등 본 조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은 「동두천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제2항 중 “매분기 마지막 달”을 “매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보훈명예상) ①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공헌을 알리고 예우하기 위하여 보훈명예상을 수여한다. ② 보훈명예상 수상 대상자는 보훈명예를 높이고 지역안보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 보훈단체 협의회에서 추천한 자 중 2명을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③ 수상 대상자에게는 보훈명예상 상패와 증서를 수여한다. ④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수여 하지 아니한다. ⑤ 보훈명예상은 매년 동두천시 보훈단체협의회 창립기념일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

	다. ⑥ 시장은 수상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견학, 주요 행사 초청,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⑦ 보훈명예상의 심사방법과 절차 등 본 조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두천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지급 결정 등) ① (생 략)	제11조 (지급 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당의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금융계좌를 통하여 매분기 마지막 달 20일에 지급한다.	② ---------- ---------- ---------- ---------- 매월 ---------- ----------.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국가보훈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보훈문화 창달의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발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붙임 2 **현행 조례**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2. "국가보훈대상자" 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 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사람
3.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사람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사람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자(이하 “등외자”라 한다)

제4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동두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시민의 나라 사랑 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주요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4. 국가보훈 관련 발굴사업 및 자료조사, 전시, 연구 관련 사업
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격려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정·재정적 지원
7. 현충시설의 유지관리
8.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공공시설물(도로, 광장, 거리, 공원 등)에 희생・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 명칭 부여

제6조(예산지원)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
2. 호국·보훈 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전적지 순례비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보훈단체 및 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보훈단체협의회 등)

① 보훈단체는 단체 간 협력과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 간 협력 도모
2. 사회적 취약계층 회원을 위한 복지사업
3. 국가유공자 등 순국선열 추모사업
4. 지역사회 현충시설 관리
5. 각종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6. 보훈 관련 시책의 건의
7. 그 밖에 보훈 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③ 협의회의 명칭, 조직, 운영 등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와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사용료의 등의 감면
2. 생존 애국지사 사망 시 조문 실시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명예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중복될 때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독립유공자수당
   가. 독립유공자: 월 50만원
   나. 독립유공자 유족 등: 월 20만원
2.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단, 만 65세 미만의 자는 5만원 지급
3. 사망위로금: 30만원

제9조(지급대상)

①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23. 4. 1.>

② 사망위로금은 제1항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자로 하며, 다음 순위에 의거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실제 장제를 주관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1. 배우자
2. 부양의무자
3. 실제 장제를 주관한 자

제10조(수당의 신청) ① 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 할 수 있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동장은 시장에게 3일 이내에 이송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급 결정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당의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금융계좌를 통하여 매분기 마지막 달 20일에 지급한다.

제12조(수당 지급중지) ① 시장은 수급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망
2. 시 관할 지역 외 전출
3.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때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유 발생 다음달부터 하되, 제1항제3호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지급을 중지한다.

제13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입 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삭제

제14조(수급권자의 관리) 시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동두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이은경 의원)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10.
발 의 자 :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 제정이유

○ 임산부의 의료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원대상(안 제3조)

○ 지원내용(안 제4조)

○ 지원신청(안 제5조)

○ 교통비의 지급 등(안 제6조)

○ 중복지원금지 및 환수조치(안 제7조～제8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모자보건법

□ 참고사항 : 붙임

○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동두천시 조례 제 호

동두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동두천시 임산부의 의료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교통비”란 임산부가 산전 및 산후 진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소요되는 교통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교통비 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 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된다.

제4조(지원내용)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 기간: 임신확인서상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2. 지원 금액: 총 3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

2. 주민등록초본

3. 통장 및 신분증 사본

4. 의료기관 및 교통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6조(교통비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청구 계좌로 교통비를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등 확인에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한 경우 지급 사실을 지체 없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급을 중단한다.

1.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2.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 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비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입금계좌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분만예정일 (출산일)		타법(타조례)에 의거 교통비(교통지원) 지원여부			□예 □아니오	

진료내역 (별첨가능)	연 번	진료일자	진료의료기관	교통비(원)
	①			
	②			
	③			
	④			
	⑤			
	합 계			

「동두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
2. 의료기관 진료 입증서류
3. 교통비 입증서류(의료기관 진료일과 동일하여 함.)
4. 본인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5.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위해 활용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o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진료의료기관명, 분만예정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5. 본인은 이 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 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2021. 12. 21.>

[전문개정 2009. 1. 7.]

□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고「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 11. 25.>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개정 2019. 11. 25.>
2. 65세 이상의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개정 2019. 11. 25.>
3.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개정 2019. 11. 25.>
4.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개정 2019. 11. 25.>
5. 그 밖에 교통약자로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신설 2019. 11. 25.>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종전5호에서 이동]

동두천시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김승호 의원)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10.
발 의 자 :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 제정이유

○ 동두천시의 각종 공사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동두천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적용 범위(안 제3조)

○ 사전예고 대상 공사 및 사전예고 내용(안 제4조～제5조)

○ 사전예고 방법 및 의견 제출 등(안 제6조～제7조)

○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8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5호

○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

○ 「수도법」 제3조제25호

○ 「하수도법」 제2조제4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참고사항 : 붙임

○ 공사 사전예고제 관련 조례 현황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각종 공사를 할 때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예고를 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활 편의를 도모하여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거나 시장의 허가를 요하는 다음 각 목의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

마.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공사

바. 「수도법」 제3조제25호에 따른 수도공사

사.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사 예정지에 속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나. 공사 예정지에 접한 토지 및 그에 속한 건물의 소유자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전예고 대상 공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예고(이하 “사전예고”라 한다)해야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 및 포장 공사

2.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가. 배수로

나. 간이상수도

다. 보도블록

라. 도시계획도로

마. 마을회관

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3. 수해 복구 공사

4. 그 밖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사를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전예고하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5조(사전예고 내용) 제4조에 따른 사전예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의 종류 및 명칭

2. 공사구간

3. 공사의 시행자

4. 공사의 시행기간

5. 공사계획의 주요내용

6. 제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간, 방법 등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전예고 방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 내용을 게시판, 현수막, 서면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보(市報) 및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의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

로 사전예고를 할 수 있다.

제7조(의견 제출 등) ① 이해관계인은 서면, 팩스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견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조치계획 또는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공사 사전예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KT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電氣計裝設備)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① 시·도지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가스공급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를 포함한 2년간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5.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붙임 2 공사 사전예고제 관련 조례 현황

□ 도로 공사 사전예고제 조례

※ 이천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적용되는 도로공사는「도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준용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주한 공사에 한한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적용되는 도로공사는「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로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주한 공사에 한한다.

□ 보도 공사 사전예고제 조례

※ 통영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보도공사 관리) ① 시장은 보도의 신설 시에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공사관계자의 책임감 제고 및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김해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보도공사 관리) ① 시장은 보도공사를 할 때에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보도연장 100m 이상 공사의 시작점과 끝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여수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보도공사의 관리) ① 시장은 보도공사 시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보도연장 공사의 시작점과 끝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동두천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김승호 의원)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10.
발 의 자 :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 제정이유

○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는 동두천시의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천원택시를 운영하여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시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천원택시 운행마을 선정(안 제3조)

○ 이용대상자(안 제4조)

○ 천원택시 운행방법 등(안 제5조)

○ 천원택시 운영위원회(안 제6조～제12조)

○ 비용의 부담 및 지원 범위(안 제13조)

○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안 제14조)

○ 비용의 지원 결정 및 사후관리(안 제15조～제16조)

○ 비용지원 중단(안 제17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제6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 참고사항 : 붙임

○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 경기도 내 천원택시 운영 관련 조례 현황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동두천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천원택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원택시”란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대중교통 취약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지역을 말한다.

3. “마을대표자”란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을 말한다.

제3조(천원택시 운행마을 선정) 천원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마을 중에서 제6조에 따른 동두천시 천원택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1. 도로 여건이 열악하여 버스 등이 운행되기 어려운 마을

2. 이용자가 적어 버스 등이 운행되지 않는 마을

3. 버스 등의 1일 운행 시간 간격이 2시간 이상인 마을

제4조(이용대상자) 천원택시 이용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 중 제3조에 따라 결정된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65세 이상인 사람과 임산부 및 통학생을 우선한다.

제5조(천원택시 운행방법 등) 천원택시 운행시간, 운행구간 및 운행횟수와 재정지원 한도 등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제6조(천원택시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천원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두천시 천원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천원택시 운행마을의 선정 및 해제

2. 그 밖에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천원택시 운행마을을 선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지역의 마을대표자나 동장의 신청을 받아 심의·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천원택시 운행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천원택시 운행마을에서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 동장이나 마을대표자의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2. 해당 지역 교통 여건이 개선되어 천원택시 운행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천원택시 운행마을을 선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택시업무 관련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관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

3. 관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

4. 관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대표

5. 동두천시 통장협의회 대표

6. 시민단체 대표

7. 그 밖에 교통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제1항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거나 시장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 범위) 천원택시 이용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운행 한 회당 천원을 부담하고, 시장은 그 비용 중 시민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하“지원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천원택시 탑승비용 지원금 신청은 마을대표자가 천원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마을대표자와 협약하여 택시 운송사업자가 이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택시 운송사업자가 작성한 택시운행일지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미비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신청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비용의 지원 결정)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16조(사후관리) 시장은 천원택시 운행마을 시민들의 천원택시 이용과 지원금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대표자 또는 택시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천원택시 운행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개선 등으로 버스가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주거·교통기반의 확충)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등”이라 한다) 관리기관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 등의 입주기업체 소속원을 포함한다]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연구기관 등 공법인

2) 회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등의 관리기관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붙임 2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① 통에 통장을,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장은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이상의 사람으로서 국가관과 애향심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③ 반장은 국가관과 애향심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해당 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을 통장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위촉한다.

④ 통·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임기가 끝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 6월 30일
2. 임기가 끝나는 날이 7월에서 12월 사이: 12월 31일

⑤ 통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한다. 다만,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결과 신청자가 없을 경우 지역주민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통장을 위촉한다.

⑥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통·반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때
2. 3월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통·반장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제6조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로 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4. 통 관할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하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때

붙임 3 **경기도 내 천원택시 운영 관련 조례 현황**

기준일 : 2023. 9. 18.

연번	지자체명	자치법규명	제정일자	이용자 부담액
1	경기도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7.19.	
2	가평군	가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15.4.20.	버스기본요금
3	고양시			
4	과천시			
5	광명시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2.20.	1,500원
6	광주시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2020.1.3.	
7	구리시			
8	군포시			
9	김포시	김포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4.17.	1,000원
10	남양주시			
11	부천시			
12	성남시			
13	수원시			
14	시흥시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4.10.	시내버스 카드요금
15	안산시			
16	안성시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2014.5.1.	버스기본요금
17	안양시			
18	양주시	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7.31.	1,000원
19	양평군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14.12.29.	시내버스 요금
20	여주시	여주시 교통 취약 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2014.10.30.	1,000원 ~ 1,500원
21	연천군			
22	오산시			
23	용인시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2017.2.24.	1,000원
24	의왕시			
25	의정부시			
26	이천시			
27	파주시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3.29.	1,000원
28	평택시	평택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2.20.	1,000원
29	포천시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3.3.	시내버스 요금
30	하남시			
31	화성시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8.12.	500원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23.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10. 31.

다. 상정일자 : 제32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용중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5년 이내로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동두천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동두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외 2건의 조례에 규정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 (안 제1조~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조례로 명시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일에 가까워짐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금회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2건에 대해서는 재정운용심의위원회에서 연장 검토를 마친 사안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23.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10. 31.

다. 상정일자 : 제32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동두천시 통장협의회 운영 경비 지원 조항 신설

○ 송내동 신규아파트 건설에 따른 세대수 증가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산동, 불현동, 소요동 통·반을 적정규모로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동두천시 통장협의회 운영 경비 지원(안 제10조)

- 시 통장협의회 운영 경비 지원 조항 신설

○ 통·반 조정(안 별표)

- 시 전체 : 157통 1,238반 → 159통 1,253반 (증 2통, 15반)
- 보산동 : 9통 43반 → 9통 44반 (증 1반)
- 불현동 : 40통 318반 → 41통 324반 (증 1통, 6반)
- 송내동 : 26통 293반 → 27통 300반 (증 1통, 7반)
- 소요동 : 17통 130반 → 17통 131반 (증 1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건설에 따른 통·반 조정과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 통장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개정안 제10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예산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시장에게 포괄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예산 집행 시에는 통장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회적 타당성과 형평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23.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10. 31.

다. 상정일자 : 제32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호우 피해」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안이 통보(행안부, 2023. 7. 20.)됨에 따라,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감면대상 :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감면세목 : 자동차세,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재산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동의안은 지난 7월과 8월에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 지원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실질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23.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10. 31.

다. 상정일자 : 제32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금액을 변경함으로써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중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서 정한 표준금액 및 수수료에 맞추어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전자파일의 복제 1건마다 5,000원에서 1GB마다 800원)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 51개 항목의 세분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2023년도 수시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23.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10. 31.

다. 상정일자 : 제32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업을 추가 반영한 2023년도 수시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생연 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변경 건(투자개발과) : 취득

구분	(당초) 2023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 2023년도 수시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합계(면적/금액)	42,262.45㎡ / 65,561.3백만 원	44,577.45㎡(증 2,315) / 73,361.3백만 원(증 7,800)
생연 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변경 건 (투자개발과)	[취득] 2020년 수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 취득 : 1,600.88㎡(1,975백만 원) · 처분 : 566.88㎡(695백만 원)	**[취득] : 건물(신규 추가)** **· 취득면적 : 2,315㎡** **· 기준금액 : 7,800백만 원**

※ 당초 계획(2020년 수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기준금액 30% 이상 증가하여 변경계획 수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수시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회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현재 생연동 825-15 일원에 조성 중인 생연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설을 위한 것이며 이는 원도심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23.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10. 31.

다. 상정일자 : 제32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의 일부를 개정하여 산업특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본 규약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정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운영협의회 위원 변경 : 시장 → 부시장 (안 제5조)

○ 운영협의회 직무 대리자 변경 : 부시장 → 국장 (안 제6조)

○ 실무협의회 위원 변경 : 국장 → 과장(안 제11조)

○ 실무협의회 대리 참석 규정 신설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규약안은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로 지정된 동두천, 양주, 포천 3개 시군이 섬유 등 산업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한 산업특구운영협의회의 규약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협의회의 위원을 당초 시장에서 국장으로, 실무협의회 위원을 국장에서 과장으로 각각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

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 규약안은 특구운영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 사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23.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10. 31.

다. 상정일자 : 제32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기준 등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설치·관리자의 책무에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추가(안 제4조)

○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추가(안 제5조의2)

-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공중화장실 중 국가나 동두천시가 설치한 화장실(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은 제외한다)
- 경찰 등 관련기관 사전 협의 후 범죄 취약·우려 지역에 소재한 공중화장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서 발생되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요건을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7월 개정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23.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10. 31.

다. 상정일자 : 제32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안 제1조～제3조)

○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와 권리,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제7조)

○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안 제8조～제10조)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안 제11조～제18조)

○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안 제19조～제26조)

○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안 제27조～제3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 조례안은 2021년 9월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

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기본 체계를 마련하고,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흐름에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23.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10. 31.

다. 상정일자 : 제32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부족과 충전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
- 위 치 : 동두천시 소유 주차장(시청사 등 16개소)
- 설치규모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37기(급속 18기, 완속 19기)

○ 운영방법

- 설치 및 운영 : 대영채비(주) (민간사업자)
- 운영기간 : 공유재산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5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 운영범위 :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 제공,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를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산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소 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23.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10. 31.

다. 상정일자 : 제32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재정지원)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개인택시 융자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근거조항 마련

○ (차령조정)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의 조례로 택시 기본차령을 2년 이내에서 더할 수 있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 (차령조정) 차령 제한에 대해 자동차 제작기술 발전 및 도로여건 개선 등 현실 반영 필요성 대두

나. 주요내용

○ (재정지원) 개인택시 양수 시 특례보증 출연금 및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사업 지원 가능 명시적 표기(안 제7조)

○ (차령조정) 현재 택시 기본차령인 개인택시 5년～9년, 일반택시 3년 6개월～6년을 2년씩 연장(안 제11조 및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가 개인택시면허 양수 시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택시의 기본차령을 당초 보다 2

년 연장함으로써 운수종사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23.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10. 31.

다. 상정일자 : 제32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 2023.12.31. 만료됨에 따라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관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위탁기간 : 2024년 1월 ~ 2026년 12월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위탁사무

- 지역사회 진단 및 기획·자원 조정
- 중증정신질환 관리
- 자살예방사업
- 정신건강증진사업
-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동의안은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의 만료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정신건강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역량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과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방식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23. 황주룡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10. 31.

다. 상정일자 : 제32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동두천시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에 대한 과도한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해소함으로써 건축 활성화를 이루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중 의료시설을 세분화하여 규정(안 제28조)

○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중 의료시설을 세분화하여 규정(안 제29조)

○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이격거리 규정(안 제3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격리병원이 아닌 치과, 한방, 정신 등 일반병원 건축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에 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23. 김재수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10. 31.

다. 상정일자 : 제32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극한호우 및 태풍 등 풍수해로 인한 주택이나 소상공인 건축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동두천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과 시민의 책무(안 제3조～제4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 지원사업(안 제7조)

○ 침수 방지시설 설치 권장 등(안 제9조)

○ 지원 신청(안 제10조)

○ 우선 지원(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 조례안은 극한 호우 및 태풍 등 풍수해로 인한 주택이나 소상공인 건축물의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23. 박인범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10. 31.

다. 상정일자 : 제32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예산의 지원에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비를 신설 (안 제5조제1항제5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 내 제대군인의 화합과 복지향상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23. 박인범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10. 31.

다. 상정일자 : 제32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공헌을 알리고 예우하기 위하여 보훈명예상 규정

○ 보훈명예수당 및 독립유공자 수당의 지급 시기를 분기별에서 매월로 변경하여 지속성 있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상 규정 (안 제5조의 2)

○ 보훈명예수당 지급시기 변경(분기별→매월)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공헌을 널리 알리고 예우하기 위해 보훈명예상을 규정하는 것과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을 분기 마다 지급하던 방식에서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23. 이은경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10. 31.

다. 상정일자 : 제32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임산부의 의료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원대상(안 제3조)

○ 지원내용(안 제4조)

○ 지원신청(안 제5조)

○ 교통비의 지급 등(안 제6조)

○ 중복지원금지 및 환수조치(안 제7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 조례안은 임산부가 산전·산후 진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친 사항이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

촉사항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23. 김승호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10. 31.

다. 상정일자 : 제32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동두천시의 각종 공사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동두천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적용 범위(안 제3조)

○ 사전예고 대상 공사 및 사전예고 내용(안 제4조~제5조)

○ 사전예고 방법 및 의견 제출 등(안 제6조~제7조)

○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 각종 공사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미리 예고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23. 김승호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10. 31.

다. 상정일자 : 제32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는 동두천시의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천원택시를 운영하여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시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천원택시 운행마을 선정(안 제3조)

○ 이용대상자(안 제4조)

○ 천원택시 운행방법 등(안 제5조)

○ 천원택시 운영위원회(안 제6조~제12조)

○ 비용의 부담 및 지원 범위(안 제13조)

○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안 제14조)

○ 비용의 지원 결정 및 사후관리(안 제15조~제16조)

○ 비용지원 중단(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 조례안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천원택시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방침을 규정하고 그밖에 대상마을의 선정, 구체적인 운행방법 등은 위원회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시행 시 수혜지역과 비수혜지역, 수혜계층과 비수혜계층 간 형평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시행 전 충분한 사전조사와 투명한 정산시스템 구축 등 정밀하고 세심한 정책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